



2014년 8월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무라야마 전 총리를 초청하여 한일 역사인식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라야마 담화가 만들어진 경위 및 의의와 아베 담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와 함께



무라야마 전 총리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생각한다

동북아역사재단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생각한다

동북아역사재단 편

 <p>9 788961 873611</p>	 <p>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p>
<p>ISBN 978-89-6187-361-1</p>	<p>비매품</p>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무라야마 전 총리와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생각한다



무라야마 전 총리와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생각한다

초판 1쇄 인쇄 2015년 5월 8일

초판 1쇄 발행 2015년 5월 15일

엮은 이 동북아역사재단

펴낸 이 김학준

펴낸 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 화 02) 2012-6065

팩 스 02) 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5

ISBN 978-89-6187-361-1 93910

-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5012933)

무라야마 전 총리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생각한다



2014년 8월 22일 재단에서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와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학 명예교수를 모시고 지나간 한일관계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전 총리가 담화를 통해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이웃 나라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한 이후, 동아시아는 무라야마 담화를 공동의 자산으로 삼아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이라는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왔습니다.

무라야마 담화가 발표된 지 벌써 2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무라야마 담화를 이정표로 삼아 앞으로 한 걸음씩 전진했던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베[安倍晋三]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하면서도 침략의 정의가 없다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8월 15일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전몰자 추도식 추도사에서 1995년 이후 정착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이웃 나라 국민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문구를 빼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아베 총리가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되는 금년에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무라야마 담화를 흔들려는 시도가 거듭되면서 무라야마 담화라는 초석 위에 쌓아온 한일 양 국민들 사이의 신뢰도 흔들리려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구십 노구의 무라야마 총리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국과 일본은 물론 동아시아에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가 1995년 담화에서 강조했다듯이 서로 ‘의지하는 데는 신의보다 더한 것이 없다(杖るは信に如くは莫し)’고 생각합니다.

2014년의 토론회는 신의를 바탕으로, 뒤엉킨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0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무라야마 전 총리와 와다 하루키 도쿄대학 명예교수,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5년 3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학준

책머리에

FOREWORD

아베 정권은 2014년 6월 20일 정부 차원에서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발표하여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했던 그동안의 노력을 일본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을 비롯한 미국에서도 이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 발표를 시작으로 2014년 8월 5일 《아사히[朝日]신문》이 좌우 4면에 걸쳐 “위안부 문제 어떻게 전달되었나, 독자의 물음에 답한다(慰安婦問題どう伝えたか、読者の疑問に答えます)”라는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내용은 1980~1990년대 16차례 보도한 고(故)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씨의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 관련 증언이 허위였다는 취소 기사 등 위안부 보도 내용에 대한 자체 검증이었다.

그 결과 ‘고노 담화’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우파 세력에게 강한 반격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산케이[産経]신문》과 우익 단체들은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전면 부인하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보다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우익의 논리만이 점령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이들은 ‘고노 담화’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만들어진 한일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치부해버리는 한편 전후 70년을 맞이하여 ‘무라야마 담화’를 무력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역사에 대한 사죄는 화해의 걸림돌’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현재에도 전후 70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할 ‘아베 담화’에 대한 우려가 깊다.

2014년 8월 22일 재단에서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를 초청하여 ‘무라야마 담화’가 만들어진 경위와 그 의미에 대해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이 왜 문제인지,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역사를 직시하는 것은 왜 중요한지를 무라야마 전 총리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토론회에는 시민단체 대표들을 비롯한 20여 명이 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결방안이 도출된 것은 아니나 토론회에 참가한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물론 토론회의 내용은 재단의 방침 혹은 정부의 입장과는 관련이 없으며 모두 개인의 의견임을 미리 밝혀둔다.

무라야마 전 총리와 와다 하루키 교수에 대해서는 아시아여성기금과 깊은 관련이 있어 오히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시아여성기금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되지 못했음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해

결 방안 모색과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들의 주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토론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외교적 경위와 대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전달을 위해 이 책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외교적 대응 경위와 향후 대처 방향」을 실었다. 물론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어떠한 외교적 구실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이미 1990년대 밝혀졌다. 같은 실수가 두 번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한일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0~2014년까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세 연표를 실었다. 연표에는 한국·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과 국제사회의 활동도 모두 포함하였다.

이 책의 발간 목적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찾고 무라야마 담화가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담화가 갖는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데 있다. 이 책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찾고 지금의 어려운 한일관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일시 2014년 8월 22일(금) 09:30~12:30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전체사회 연민수(延敏洙)

토론회 종합사회 윤덕민(尹德敏)

기조연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토론 무라야마 도미이치, 와다 하루키
강창일(姜昌一), 김창록(金昌祿), 손승철(孫承喆),
안신권(安信權), 양미강(梁美康), 오태규(吳太奎),
윤명숙(尹明淑), 이동관(李東官), 이부영(李富榮),
이종국(李鐘國), 이원덕(李元德), 정진성(鄭鎭星),
조세영(趙世暎)

무라야마 도미이치 村山富市
일본 제 81대 국무총리



와다 하루키 和田春樹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강창일 姜昌一
제17~19대 국회의원,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김창록 金昌祿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철 孫承喆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안신권 安信權
나눔의 집 소장



양미강 梁美康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오태규 吳太圭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윤덕민 尹德敏
국립외교원 원장



연민수 延敏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윤명숙 尹明淑
충남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전임연구원



이동관 李東官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부영 李富榮
전 국회의원



이종국 李鐘國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원덕 李元德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정진성 鄭鎭星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세영 趙世暎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특임교수





나눔의 집 |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제공 _ 끌러가는 조선처녀(이용녀 작)



CONTENTS

이사장 발간사 _ 4

무라야마 전 총리에게 한일 역사인식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묻는다 _ 15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외교적 대응 경위와 향후 대처 방향 _ 65

일본 정부의 담화문 및 공동선언 _ 101

연표 _ 118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생각한다



01

무라야마(村山) 전 총리에게
한일 역사인식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묻는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총리에게
한일 역사인식과 일본군
日韓歴史認識と日本軍「慰

2014.8.22(金) 9:30~12:30 동북아역사재단 11



「慰安婦」問題の解決を問う

「慰安婦」問題の解決を問う

총 대회의실 東洋大学11階大会議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村山富市

연민수
延敏洙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토론회의 전체 사회를 맡은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실장 연민수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2000여년의 교류가 있는 이웃이자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일관계는 과거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국 정상 간 대화도 단절되어 있어 사회 다방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한일 역사인식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께서 「한일 역사인식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묻는다」는 주제로 기초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村山富市



무라야마 도미이치입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와다 하루키 선생님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서로를 이해하는 우호적인 한일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우선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일본에서는 선거를 통해 다수의 표를 얻은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겨우 70여 명의 의원수를 가진 사회당(社會黨) 대표가 총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

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연립정권이 성립되면서 본회의 투표를 통해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총리가 되면서 이 내각에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이 내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마침 전후 50주년이었기 때문에 전후부터 지금까지의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 과거를 매듭짓는 것이 이 내각에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일본 국내에는 미나마타병[水俣病]이나 피폭자원호법(被爆者援護法)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있었고, 저는 그러한 과제들에 대해서 나름의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문제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국제적으로 오늘날의 일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지정학적·역사적·종교적인 모든 분야에서 아시아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중국과는 매우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가 된 후 한국·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일본이 전후 복구에 노력하여 단기간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은 아직 전쟁에 대한 반성이나 사후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대국이 된 일본이 또다시 군사 대국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한 반성과 청산을 확실하고 이에 대해 피해국들의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일본이 평화와 민주주의에 공헌할 수 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무라야마 내각은 자민당(自民党)과 신당 사키가케[新党さきがけ], 사회당(社会党) 3당이 연립해서 세운 내각입니다. 전후 50주년을 계기로 3당은 과거의 전쟁을 반성하고 평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국회 결의를 하지는 데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수정을

거듭하다보니, 결국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결석과 반대가 많아 겨우 성립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의원(參議院)에서는 의제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오히려 ‘국회 결의를 하지 않는 편이 좋았을까’ 하는 후회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생각에 내각에서 담화를 발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담화[村山談話]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자민당 내 상당수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담화를 발표하지도 못하는 상황을 가장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각이 총사직한다는 결의로 각의 결정(閣議決定)을 추진하였고 다행스럽게도 각의에서 만장일치로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담화를 한국·중국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역사 문제를 일단락 짓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후계 내각인 민주당(民主黨) 정권도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저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와 김대중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동성명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이 무라야마 담화와 같은 역사적 반성을 높이 평가하였고, 새로운 한일관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 일본에 한류 붐이 일어나면서 한일관계는 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2008년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와의 대담을 통해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새로운 중일관계의 막을 열었습니다. 특히 후진타오 주석은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에서의 강연을 통해 일본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본

이 전후 평화 국가를 위해 걸어왔다는 점, 둘째, 일본이 경제 발전을 이룩한 덕분에 중국도 오늘날의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점, 셋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선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울 것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일관계는 전략적 호혜관계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통해 앞으로 한일관계와 중일관계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고 기뻐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저는 가까운 미래에 무라야마 담화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신조[安倍晋晋] 총리도 제1차 아베 내각에서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명확히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도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아베 내각이 되면서 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를 재검증하겠다는 거나 ‘침략’이라는 단어에는 국제적인 정의가 없다고 하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라야마 담화를 전부 검증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발언을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단언하였습니다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베 총리는 중일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중일관계가 냉담해져서 5년간 중일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제1차 아베 내각 성립 후 아베 총리가 바로 중국을 방문하여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제2차 내각의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를 재검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1차 내각 때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말한 것은 진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검증의 의미는 계승을 토대로 한 21세기에 맞는 일본의 방침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재검증은 계승한다는 것을 토대로 21세기에
맞는 일본의 방침이라는 것을 표명하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그것이 재검증의 의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일이 화해를 하고 오해를 풀어
사이좋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경과와 현상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현재 일본 국민 중에는 무라야마 담화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 상관없이 한일·중일관계를 회복하여 우호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고노 담화[河野談話] 이후 총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국제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각 내에서 여러 논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연립정권을 이룬 3당은 ‘전후 50년 문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고노 담화에서 언급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자민당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사안을 다시 꺼내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사회당은 이 문제가 인권에 상처를 준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일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로의 지혜를 모은 최종 결론은 국가 대신 국민이 모금하여 보상[償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금을 통해 전쟁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일본의 역사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모금 활동 중 일본이 과거에 이렇게 심한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보상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편지도 받았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보상을 지연할 수 없으므로 모금 활동을 진행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분들의 훼손된 명예를 보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총리대신의 사죄 편지와 기금 이사장의 편지를 함께 보내는 등의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금만으로는 부족했기 때

문에 국가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액수를 보조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보험이나 의료비 등을 부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하 아시아여성기금[아시아女性基金])’은 우파에서도 좌파에서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파는 이미 끝난 일을 왜 이제 와서 끄집어내어 사죄해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좌파는 그 정도로는 안 되고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항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 때문에 아시아여성기금 임원들이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와다 선생님도 항의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 모금에 대한 반대가 많아 피해자들 중 약 1/3 밖에 기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점에서 완전한 해결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남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현재 한국에 약 50여 명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은 분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지, 정치적으로 어떤 해결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 피해자의 요구를 진정으로 반영하는 선에서 양국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방안을 논의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민주당 정권 때 사이토 쓰요시[齋藤勁] 관방부장관(官房副長官)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해냈다고 들었지만, 안타깝게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참고하여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민수: 무라야마 담화는 반드시 계승해야 할 일본의 과제입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께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차원, 또는 정상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양국이 역사 인식을 공유해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와다 하루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와다 하루키
和田春樹



저는 우선 무라야마 전 총리의 말씀 중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해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 이하 정대협)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및 일본의 운동 단체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개인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행정 당국 관료들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었으므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 조치는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전제로 일본의 정치가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무라야마 정권이 성립하였을 무렵, 일본은 외무성(外務省)을 중심으로 전후 50주년을 맞이하여 총액 1,000억 엔의 '평화우호교류 사업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무라야마 내각의 관방장관이거나 시고조(五十嵐広三)는 개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당의 주장을 누르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위한 기금을 만들어 정부 자금과 국민 모금을 합쳐서 보상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 8월 19일 아사히신문 1면에 무라야마 신정권 이 ‘전 위안부에게 ‘위로금’, 민간 모금으로 기금 구상, 정부는 사무 비용만 (『元慰安婦に『見舞金』、民間募金で基金構想、政府は事務費のみ』) 부담하기로 합의 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見舞金’은 한국어로는 ‘위로금’으로 번역되었는데 사죄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 인해 만들어진 인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관부재판(開釜裁判)에 출석하고자 일본을 방문 중이던 이순덕(李順徳) 할머니는 이 기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얼굴을 벌겋게 하여 화를 내면서 “나는 거지가 아니다. 여기저기에서 모은 동정금은 필요 없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일 도쿄에서 민간 모금으로 위로금을 내는 구상을 철회할 것과 개인 보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국내외 28개 단체가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이가라시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무라야마 정권은 위로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권 내부의 협의는 그해 가을 ‘전후 50년 문제 프로젝트’팀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소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사회당 위원은 이 단계에서도 개인적인 보상 지급에 정부의 자금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보고서에는 정부는 ‘도의적인 입장에서 그 책임을 다한다(『道義的立場からその責任を果たす』), ‘사죄와 반성의 마음으로 국민적 보상을 한다(『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から国民的償いをあらわす』), ‘국민 참가하에 기금을 설치한다’, ‘정부는 거출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협력한다’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위원회 보고서가 12월 7일에 발표되자 운동 단체들은 이를 강하게 비난하고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보상 사업의 경우, 한국어로 하면 ‘償い’이 ‘補償’과 똑같은 ‘보상’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얻지 못했습니다. ‘보상(償い)’은 영어로 ‘atonement’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는 ‘속죄’를 의

미합니다. 예를 들어 ‘The Atonement’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인류의 죄를 속죄하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때문에 한국과 대만 같은 한자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보상(償い)’이라는 단어에 담긴 ‘속죄’의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았지만, 필리핀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영어권 세계에서는 일본 측의 마음이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국과 대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 아시아여성기금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 7월에 ‘아시아여성기금’이 출범한 후, 기금 내부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1995년 10월에 기금이 사업의 대상으로 삼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 기금이 해산되면서 만들어진 디지털 기념관 ‘위안부 문제와 아시아여성기금’의 제1실 모두(冒頭)에는 1995년에 제시되었던 정의가 적혀 있는데, ‘이른바 종군위안부란 이전의 전쟁 시대에 일정 기간 일본군 위안소 등에 모집되어 장병에게 성적인 봉사를 강요당하였던 여성들을 말합니다(「いわゆる『従軍慰安婦』とは、かつての戦争の時代に、一定期間日本軍の慰安所等を集められ、将兵に性的な奉仕を強いられた女性たちのことです。)」’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요당하였던(強いられた)’은 ‘강제당하였던’의 의미로 영문으로는 ‘forced’, 한국어로는 ‘강요당하였던’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고노 담화로부터 일본군‘위안부’의 정의를 만들어 내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기금 사업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시아여성기금은 1996년 6월 4일에 보상금의 액수를 200만 엔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기금의 총액을 사업대상자 수로 나누어 피해자 개개인 별로 금액을 설정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금에서는 총리의 사죄 편지와 함께 정부와 국민이



속죄의 마음을 전달하려면 일정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한국과 대만의 인정·등록 피해자 수가 190여 명 정도였기 때문에 1996년 4월 말 모금액 약 3억 3,300만 엔으로는 보상금을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결정에 앞두고 하라 분베에[原文兵衛] 이사장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에게 보상금이 부족할 경우 나머지는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민 모금으로 보상금을 준다는 기금의 기본적 성격에 본질적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수정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기금은 한국, 대만, 필리핀 등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285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최종 모금액 5억 6,000만 엔에서 이 보상금을 거의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과 대만에서 50명이라도 더 받았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정부 자금과 국민 모금이 함께 보상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 기금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좋지 않은 인상 때문에 피해자들의 반발을 가라앉힐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되돌아보면 아시아여성기금은 필리핀과 네덜란드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에서는 피해자들의 반발로 기금을 받아들인 사람이 인정·등록 피해자의 1/3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더욱 노력해야만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한국의 피해자들과 정대협과 같은 시민 단체가 받아들이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현안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저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 말에 이동관 총장님이 추구하셨던 해결 방안이나 좀 더 나아가서는 2014년 6월 2일 아시아연대회에서 새롭게 발표한 일본 정권에 대한 요구와 해결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민수: 와다 선생님은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한 그간의 사정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합 토론은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이 주관해주시겠습니다.

윤덕민
尹德敏



소개받은 윤덕민입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께서 무라야마 담화를 둘러싼 경위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고노 담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평소 지론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무라야마 담화가 일본 정부의 공식 역사인식이고 전 세계에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고노 담화를 재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사실 1965년에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지만 그때 우리나라 국민 중 이 수교에 대해 찬성도 많았지만, 그만큼 반대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일본과 1965년 국교정상화를 진행하였던 데에는 경제적 이유도 있었지만, 전후 일본이 군국 일본에서 벗어나 평화의 일본, 민주주의 일본으로 갈 것이라는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좌표가 무라야마 담화라고 생각합니다. 무라야마 담화의 정신이 기초가 되어서 이후에 김대중·오부치 공동성명이 나왔고, 강제병합 100년에 즈음해서 간[菅] 총리 담화(總理談話)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1965년 이후 한일관계의 기초가 되어왔는데, 현재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한일관계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지난 6월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재검증 문제는 담화의 뜻을 훼손시키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한 유감과 실망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봤으면 합니다. 우선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를 짚어보고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해온 여러 가지 사죄의 의미들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과 고노 담화의 재검증 문제, 그리고 현재의 상황들을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인지, 또 한일관계의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강창일 의원부터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姜昌一



저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가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서론, 새로운 일본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였는데 지금 보면 그때가 시작이 아니라 종점이었습니다.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부터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1995년을 일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탈 많은 시작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탈냉전 이후에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동북아시아에도 새로운 패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군사대국화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이 치열한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한반도는 그 틈새에 끼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관할 수는 없지만 아시아가 분열·갈등으로 치달을지, 아니면 공동·번영·평화의 길로 나아갈지의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달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일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으로 일본 정치인들을 수시로 만나고 있지만 현재의 한일관계는 1965년

이래 최악의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정치인들의 쓸데없는 망언들과 망동만이 한일관계에 문제가 되었지만, 요즘은 한국과 일본에서 국민적 차원의 반일 감정, 반한 감정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2015년이 정상화 50주년이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지만 여러모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은 환경 문제, 경제 문제 등 사안별로 주제를 선택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 방법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간사장과 같은 분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보자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핵심이 없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데 일본 자민당의 태도가 적절치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일총회(2014년 10월 25일) 공동성명서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움직임을 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덕민: 강창일 의원께서 한일관계의 현안과 의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부영 의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영
李富榮



저도 강창일 의원의 말씀처럼 한일관계가 어려워지면서 동북아시아 전체

가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본헌법 제9조(日本國憲法 第9條)는 평화헌법의 근간이지만, 제2차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A급 전범을 처벌하지 않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국제협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각 회의만으로 집단적 자위권이 발동되면서 평화헌법은 간단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일본 스스로만 제2차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무효화하고 전전(戰前) 체제의 가치관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라야마 전 총리나 와다 선생님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국가 체제의 변화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동아시아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평화헌법을 지키고 군사대국화를 반대하는 일본 내 세력과 북핵의 축적이나 고도화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국 내 평화·민주주의 애호 세력이 연대를 하여 '한일평화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일평화연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한일관계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덕민: 이부영 의원께서 한일 시민사회 연대의 중요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전후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근대의 역사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접근이 우리한테도 필요합니다. 이를 시민사회 연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과거 민주당 정부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셨던 이동관 총장께서 말씀해주시시오.

이동관
李東官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일 간의 상황이 심각한 지금 이명박 정권 말에 있었던 협상 추진 상황을 소개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논의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역사의 증인으로 나온 셈입니다.

2011년 가을 교토[京都] 한일정상회담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당시 일본 총리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갈등만 불거진 채 끝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다음 해인 2012년 봄부터 여름에 걸쳐 외무차관 수준의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 사이토 쓰요시[齋藤勳] 일본 관방부장관과 천영우(千英宇)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간에도 비공식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습니다.

한일은 크게 약 세 가지 정도의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우선 총리 명의의 사과 편지를 대사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그 편지에는 ‘일본 정부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아시아여성기금 때 지급하였던 금액에 준하는 300만 엔의 위로금(사죄금)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중 ‘도의적 책임’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일본의 국가적·법적 책임 인정을 요구하는 마당에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김영삼(金泳三) 전 정부 때부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

문에 돈 문제는 일본 정부에 맡긴다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까지만 인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한일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외무차관 라인 협상에서 중간 역할을 하던 이원덕 선생님과 와다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할 당시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이었습니다. 아시아여성기금 때는 미키 다케오 [三木武夫] 전 총리의 부인인 미키 무쓰코 [三木睦子] 여사를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데다가 당시 제가 대통령 언론문화특임대사였기 때문에 두 분이 저를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일본군‘위안부’ 협상이 이미 8부 능선에 와 있는데 정상들에게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이 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두 정상 의견 확인하고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정부 라인의 채널을 통해 협상을 벌여보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어렵게 이른 일본군‘위안부’ 협상 내용이 이대로 사장되는 것이 아깝고, 그나마 일본 민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영 해결할 길이 없을 수도 있다는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외교 채널의 실무적인 협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양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의 경위에 대한 두 분의 설명을 듣고 저는 한일관계의 제대로 된 과거 청산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협상에 나섰습니다. 사전에 협상 파트너였던 사이토 관방부장관과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도의적 책임’이 아닌 일본이 좀 더 직접적으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이 필요하다는 점과 300만 엔에 관해서는 ‘사죄금’으로서 일본 정부의 국가 예산에서 지급함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가능하다면 도쿄 [東京]에서 만나겠지만 협상이 무산될 경우에도 끝

까지 보안을 유지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후 사이토 부장관 측에서 ‘한국 측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우선 만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와서 2012년 10월 초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사이토 부장관은 일본 총리의 편지를 사죄문으로 칭하는 데에는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이어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일본 측의 당초 안에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즉 일본말로 이야기하면 ‘逃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이는 한국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인 만큼 이것을 ‘책임은 통감한다’로 바꾸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이토 부장관은 총리를 설득해보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다음 300만엔의 사죄금은 각의 결정으로 지급하여 일본 정부의 책임을 사실상 확실히 인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연구 기구를 만들자는 선에서 합의한 후, 양국 정상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양 정상이 이를 승인하면 한국 정부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관련 시민단체들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정도라면 합의의 9부 능선까지는 이르렀으며, 두 정상의 결단만 있으면 외교 채널에 넘겨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중에 사이토 부장관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역사적 합의가 무산된 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을 때 일각에서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런 협의를 하였느냐는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선까지 합의가 완벽히 이뤄지면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특별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마무리 지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 정부가 매달렸던 이유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정치적 결단 없이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본에서는 국회 해산이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과거사 청산 의

지가 있는 민주당 정권 내에, 한국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역사적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은 2% 정도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민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뒤 이명박 대통령은 전체적인 협의 내용에 동의하였고 저희는 일본 측 결단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노다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국회를 해산하였고, 그 후로 자민당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해결은 만사휴의(萬事休矣)가 되었습니다.

당시 노다 총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 데에는 일본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기 때문도 있었지만 본인의 철학이나 인식의 영향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논의가 무산된 것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이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은 논의의 수준이 너무나 후퇴하여 일본이 고노 담화 자체를 재검증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저는 고노 담화를 시작으로 무라야마 담화를 거쳐 이명박 정부 때 일본군‘위안부’ 문제 협상으로 이어진 협의 내용이 앞으로 과거사 해결의 레드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일관계의 모든 사안이 과거사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고리를 풀고 현안은 현안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일관계는 연간 수백만 명이 오고 가는 엄청난 민간 교류의 바탕이 되는 만큼, 과거사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때문에 다른 현안, 나아가 건전한 양국 관계 설정이 방해받는 것은 곤란합니다.

윤덕민: 우리 토론에서 중요한 이명박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협상에 대한 사실 관계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지금까지 고노 담화 직후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노력, 그리고 일본 민주당과 이명박 정부 사이에 있었던 노력이라는 두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까. 정진성 선생님께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진성
鄭鎮星



무라야마 총리께서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가 일본의 공식적인 역사 인식으로서 전 세계에 약속한 국제 공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도 1996년 3월에 제네바의 일본 대표부가 UN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에 일본 정부가 개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전 세계에 공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과거에 대한 태도를 후퇴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 사안이 이미 전 세계적인 사안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일정상회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라야마 담화가 나올 때까지도 별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중국 정부가 요즘 강하게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를 넘어서 일본과 아시아 전체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예리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가진 UN을 비롯한 국제 기관들이 발표한 국제법적 권고들도 전부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65년 한일협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민당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모두 끝났다고 하는데, 그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이미 유수의 국제법학자들이 1965년 한일협정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다루이지도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협정에서는 그 이외의 인권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의 피해에 관한 문제는 국가 간의 어떤 협약이 있더라도 항상 제기할 수 있다는 국제법에 근거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가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 때도 자민당으로 인해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현재 자민당 정권으로 인해 일본의 태도가 후퇴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이러한 상황은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인지, 일본의 내부 인식과 역사인식은 그래도 발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단지 사회당 정권인가 자민당 정권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다시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인식이 안 좋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하여 관련 단체, 그리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해왔던 연구자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법 해결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지 60년이나 지났고 할머니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50분 정도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이 그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역사적 규명에 뿌리를 두고 원칙에 충실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관 총장님 말씀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한일관계를 해친다고 공격받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일관계와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함께 묶지 말고 외교관계, 한일관계와 분리시켜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역사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에 충실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사회 분야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윤덕민: 정진성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양미강 공동대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양미강
梁美康



저는 1997년 정대협(정대협)의 총무로 있었고 아시아여성기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시아여성기금으로 인한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시아여성기금이 최선의 해결 방법이었다고 하지만, 한국과 대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었습니다. 그 갈등의 근본 원인은 여성기금의 성격이 위로금인지 아닌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아여성기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와다 선생님에게 그 당시 일본 측이 얻었던 경험과 교훈을 듣고 싶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단계

적 절차가 필요한지, 절차 중 어떤 부분을 반드시 바꿔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와 와다 선생님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셨지만 비난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후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후유증이 크고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없는 해결 방법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양국 간 인식 차이가 너무 크고 국민 감정도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양국 간 상호 신뢰가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이부영 의원이 제시했던 ‘한일평화연대’ 처럼 다양한 차원에서 정치 원로 및 학자 모임이 계기를 마련하고 한일 간의 중간에서 관계를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일관계를 보듬어가면서 서로 이해시킬 수 있는 중간층은 어디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정상 간에도, 의원들 간에도, 정치인들 간에도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답답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층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양국 국민을 성숙한 단계로 끌고 갈 수 있는 국가적 프로그램이 있다면 국민들이 주도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과거사 문제를 직시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덕민: 양미강 선생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태규 한겨레 논설위원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태규
吳太奎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일본 측의 의견과 해결되지 않았다는 한국 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한국 측의 문제 제기에 동의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해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965년 한일협정과 현재 재판의 정신에 따라 계속 법률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외교적 입장에서 정치적 타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때에는 법률적 해결을 내세우고, 어떤 때에는 인도적 해결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도적’·‘도의적’ 해결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일관계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적’·‘도의적’ 문제는 가장 상위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마치 정치적 타결과 같은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적’·‘도의적’ 해결이라는 용어보다는 ‘정치적 타협’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타협이 가능한지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제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였던 ‘아시아여성기금’이 실패한 것처럼 정치적 타결은 대부분 어떠한 선을 넘지 못합니다. 법률적 해결 차원에서든 정치적 차원에서든 어느 시기에, 어느 정권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마지노선을 두기보다는 문제는 문제대로 서로 확인하여 남겨두고 나머지 현안은 이것과 관계없이 협력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윤덕민: 윤명숙 선생님이 연관되는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윤명숙
尹明淑



저는 사회당이 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방식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국민기금의 국민모금 방식은 사회당의 독자적인 방안이 아니라 미야자와 기이치[宮沢喜一] 총리 때 하려던 '폭넓은 국민의 참가'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연립정권에 들어가기 전 사회당은 피해자에게 개인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일안보조약에 대해서도 반대했고 자위대도 위헌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립정권으로 총리직을 얻으면서 기존의 태도를 전부 뒤집어버렸습니다. 저는 당시 자민당이 과거사 청산에 대한 주도권을 사회당에게 넘겨주는 대신, 사회당도 자민당이 원하는 안보 문제나 자위대 문제, 헌법 개정 문제 등을 양보하는 타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이미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갑자기 터진 겁니다. 자민당 입장에서 보면 '중전 50주년'을 앞두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자민당 스스로 해결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오는 관례를 깨고 사회당의 위원장을 총리로 지명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무라야마 총리는 과거 내각을 꾸릴 때 '과거를 매듭짓는 것이 이 내각에 주어진 최대 역할'이

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라야마 총리는 이 시점에서 국민기금을 만들었던 배경과 사회당의 역할 등에 대해서 어떻게 재평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사민당(社民黨)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금을 만들 당시 도쓰카 에쓰로(戸塚悦朗)의 발언에 따르면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가 민간 기금 방식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외무성에 전달하였는데, 외무성이 이를 무라야마 총리께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립정권에 들어가면서 사회당이 가지고 있던 소신이 바뀐 것에 대해서 무라야마 총리 개인의 의견과 사회당 의견을 구분해서 듣고 싶습니다.

윤덕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무라야마 전 총리와 와다 선생님이 답변해주시시오.

무라야마 도미이치
村山富市



어떤 의미로는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후 일본은 미국이 중심이 되는 연합국의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미·소의 대립이 점점 격렬해지면서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을 민주 국가로 만든다는 전제는 점점 애매모호하게 되었고, 미국이 선택한 점령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고 곧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국제적인 정세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령 정책도 크게 변하여 민주화에 역행하는 경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태평양전쟁에 활약하여 공직에서 추방되었던 사람들이 모두 부활하였고 예전의 세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 조합을 만들고 일본 민주화의 선두에 섰던 주요 지도자들은 오히려 추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면서 일본의 전쟁 책임은 강하게 추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책임 혹은 보상도 모두 보류되었습니다.

미·소의 대립이 완화된 90년대 전반부터 강제노동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미뤄졌던 전쟁 책임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을 지금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구와 전쟁을 했는지, 누가 이겼는지만을 질문합니다. 저는 무라야마 담화가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일본 국내에서는 무라야마 담화를 환영하기보다는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는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전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무라야마 담화’라는 단어조차도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날 무라야마 담화가 이렇게 화제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중에는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기금의 방식이 좋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회당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사회당은 70명뿐이었고 대다수는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수 세력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이미 이것은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인권 문제 차원에서 UN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당의 주장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서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겠지만 국민이 대신해서 보상한다는 뜻으로 발족한 것이 아시아여성기금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을 추진한 일 자체가 잘못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 내부의 상황적인 한계 속에서 기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과거사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의 결과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한일회담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길 바랍니다.

와다 하루키
和田春樹



가해국과 피해국 사이에는 전쟁이든지 식민지든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는 가해국의 사죄가 필요합니다. 사죄를 하고 그 후에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국민 사이의 감정 대립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양국 정부와 국민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양미강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시아여성기금’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측의 이해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본 스스로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위로금 문제와 보상(償い) 문제, 기금의 기본적인 방식 제도 모두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정부와 국민의 합의

가 없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해결 방안이든 피해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시아여성기금이 남긴 최대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치적 합의’ 혹은 ‘타협’의 문제입니다. 단어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저 또한 ‘타협에 의한 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 힘들어서, 또는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타협해야 한다는 식의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저 또한 다른 분들처럼 양국 국민과 운동 단체, 외교 당사자들이 다중적·다층적으로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 국민들은 중국 침략이나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 없이 ‘평화국가’라고 칭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무리야마 담화는 이러한 일본 국민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일본 국민 중에는 무리야마 담화를 지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믿고 서로 토론하면서 해결책을 도출해나가야 합니다.

무리야마 도미이치
村山富市



일본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상황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당시 사회당은 헌법 개정과 자위대에 대해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제

가 총리가 된 다음, 자민당은 자위대의 필요를 주장하며 이를 규제하는 헌법은 위헌이라며 헌법 개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신·아와지 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과 도카이 대지진[東海大震災]이 발생하였고, 자위대가 가장 먼저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자위대를 인정하게 되었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자위대가 좋다는 여론이 80% 이상입니다.

때문에 저는 그러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당이 자위대를 합헌이라고 인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국내에서 재해가 있었을 때 구조를 담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위대를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자위대를 반대하였던 사람들도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당시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일안보조약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 조약은 미일 간의 방위 조약 개념이 아닙니다. 70년대 초반 미국의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r)는 중국에 가서 당시 마오쩌둥[毛澤東], 저우언라이[周恩來]를 만나 이 조약은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런 안보조약이라면 좋다고 미일안보조약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전쟁을 반성하지도 않고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경제대국이 된 일본이 또다시 군사대국이 되어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우려를 민감하게 느꼈고, 이러한 우려를 미일안보조약으로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독자적으로 군사대국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조약에 대한 찬반 논의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고려한다면 미일안보조약에 대한 찬반을 외치는 것보다는 일단 받아들여서 좋은 점은 살리고 나쁜 점은 고치는 방식이 좋겠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총리가 되고 나서 1주일 후에 클린턴(Bill Clinton | William Jefferson Blythe IV)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전후 50년이나 지났지만 미일 간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에는 미군 기지가 있고, 그로 인한 피해도 있기 때문에 국민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방위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미군 기지를 철거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미일 간의 군사동맹이 아니라 아시아가 주체로 참여하여 서로의 책임하에 조약을 체결하고 아시아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6자 회담 등도 동북아시아의 안전 보장의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구상 속에서 미일안보조약을 일단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 재임 기간이 1년 반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구상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윤덕민: 무라야마 총리와 와다 선생님의 소신 있고 솔직한 발언 감사합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쓰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에서 10여 년 전에 일본 우익 세력의 입장을 반영한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새마을호에서 일본어 방송을 없앤다든지, 일본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오는 것을 중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상당히 진보적인 학자에 속하는 일본인 친구에게 국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TV에서 한국 사람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자기 딸에게 절대 그런 엉터리 교과서로 공부시킬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다원적 민주주의가 있는 나라로 좌파가 만든 교과서가 있듯이 우파가 만든 교과서도 있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시민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시민의 건전한 몫을 믿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시

민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손승철 선생님이 발언해주시겠습니다.

손승철
孫承喆



우선 오늘의 핵심 주제인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자꾸 ‘해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역사적으로는 결코 쓸 수 없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진성 선생님 말씀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 현안을 분리해서 접근하지는 의견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일관계사를 보면 일본군‘위안부’ 문제만큼 심각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4~15세기 전후로 약 200년간 왜구(倭寇)의 한반도 약탈이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당시의 사료를 보면 왜구들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가혹한 행위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인해 그 당시 한반도 인구 1,000~1,200만 중 2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양국은 통신사(通信使)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통신사처럼 신뢰를 가지고 풀어가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좀 더 거시적·역사적으로 접근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라야마 총리는 오이타[大分]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오이타라는 지역은 한반도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이타에서 유명한 우사신궁[宇佐神宮]에 가보면 2~4세기 가야의 철 문화가 일본에 도래하여

일본의 철 문화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세기 경주에서 제작된 우리나라에도 몇 개 남지 않은 신라종이 일본의 국가기념문화재로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타 지역에는 조선 전기에 유명했던 오토모[大友]가 있어 약 200년간 교류가 계속되었습니다. 무라야마 총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 토양 속에서 자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간의 교류와 공존의 역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양국 간의 갈등과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일 간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기간도 길었습니다. 그리고 양국관계가 갈등의 시기에서 평화의 시기로 바뀔 때는 언제나 협력과 공존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내면에는 신뢰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항상 신뢰와 믿음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사절단의 명칭을 통신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뢰와 믿음은 역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인식, 반성, 교육 등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일본군‘위안부’ 문제보다도 역사학적으로 더 심각한 것은 역사왜곡 문제입니다. 지금 아베 총리가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법적·정치적으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역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인식과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나 반성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에서 자민당이 집권하면서 극우세력들의 역사왜곡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 기술 자체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지속되었던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활동은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이 단절되면서 그 이후에는 모든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양국관계를 다

시 시작하려면 역사 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역사 속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하고, 역사왜곡이나 역사 교육, 역사 대화의 문제 등과도 연관 지어 다루어야 합니다.

윤덕민: 역사적인 입장에서 한일관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김창록 선생님은 무라야마 담화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록
金昌祿



우선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식민지 지배 책임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진일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모두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여성기금도 그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반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잘못된 전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측이 1965년에 다 끝난 일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밑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전제부터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65년에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인했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은 책임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법률론만을 고집하며 그냥 끝났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베 정부가 무라야마 담화를 후퇴

시킨다면 무라야마 담화와 그 잘못된 전제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은 나쁜 방향으로 메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의 불행이자 아시아의 불행입니다. 따라서 무라야마 담화와 그 잘못된 전제 사이에 있는 간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줄이고자 하는 노력, 즉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 인정에 기반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2015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만큼 한일관계 진전을 위한 한일 양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아시아여성기금에 참여한 일본 국민의 선의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금은 성공하지 못했고, 기금이 출범한 때로부터 이미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시아여성기금의 방식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이 실패한 원인은 일본의 국가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배상이 명확한 형태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는 역시 1965년 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1965년에 벌어졌던 일과 그로 인한 영향을 심각하게 되짚어 봐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해결책 마련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다시 미봉책으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문제가 끊임없이 재발하게 될 것입니다.

윤덕민: 이어서 이원덕 선생님도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원덕
李元德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2015년 한일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아베 담화(安倍談話)’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무라야마 담화보다 후퇴한 담화가 나온다면 한일관계 더 나아가 일본-아시아 관계는 파탄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낙관적인 부분은 일본인들이 모두 아베나 자민당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비판 또는 반대 여론이 50%나 있고, 평화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는 60% 이상의 일본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부영 의원의 말씀처럼 일본 문제는 단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 나아가 세계 평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경을 넘어선 연대, 즉 평화 연대를 결성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아베 정부가 하는 행동에 따라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나 규범을 추구하는 평화 연대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론 중 정진성 선생님이 분리론을, 손승철 선생님이 과거 한일관계의 경험에 입각한 방법을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한일관계는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정한 진전 없이 한일관계의 개선이나 타결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외교적인 쟁점으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고령으로 인해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 및 명예 회복에 있다고 봅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한을 품

고 돌아가시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타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타결을 위해서는 네 가지 정도의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입법 해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일본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본의 정치 지형을 볼 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둘째는 한일협정 제3조 해석에 대한 분쟁을 중재위원회를 통해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의 핵심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한일협정의 포함 여부입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에서 만약 이 문제가 1965년에 해결되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8개 항목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더라도 다시 원점인 지금의 상태로 돌아올 뿐이므로 궁극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셋째는 기금이나 재단 방식이지만 지금까지의 논의처럼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는 이동관 총장이 말씀하셨던 정상회담이나 정치적인 교섭을 통한 타결을 모색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철저히 정치적인 판단과 역사인식에 기반을 두고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양 정부가 중심이 된 해결만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윤덕민: 이원덕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세영 선생님이 발언해주십시오.

조세영
趙世暎



무라야마 담화가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 간 공동선언의 기초가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당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담화도 무라야마 담화를 기초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일본, 특히 우파에서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사죄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한국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하면서도 그것과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로의 피로감이 충돌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무라야마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발표했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무라야마 담화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일본 사람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고, 그에 대한 미일 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자 합니다. 아베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아니라 역사인식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더 이상 한국의 피로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저는 기금 속에 담긴 선의를 믿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러한 선의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언 중에 아시아여성기금의 선의를 인정하는 발언이 많이 나와서 한국 측에도 인식의 발전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무라야마 총리와 와다 선생님이 기금이 한국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계자들의 이해와 납득을 얻지 못한 부분을 실책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피해 당사자와 양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 해결책을 위해서는 한일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아닌지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더 이상 이 문제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해 당사자들과 관계자들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을 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2011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당사자들은 2011년 재판을 통해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부가 한일협정 제3조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의 결정에 따라 한일협정 제3조에 의한 중재 절차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더 이상 양국 국민의 감정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일관계 문제입니다. 현재 한일관계는 장기적인 비정상 상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는 분리 대응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같은 유형은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반면에 경제 분야나 안보 분야에서 서로가 상호 이익이 있는 부분은 실용적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분리 대응만이 지금의 난국을 조금이라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윤덕민: 조세영 선생님이 무라야마 담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한일관계 문제까

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나눔의 집의 안신권 소장님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권
安信權



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있는데 현재 한일 역사 갈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는 침략의 가해자인 일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침략 전쟁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하기 힘듭니다.

가해자의 관점에서 발표된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그리고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아시아여성기금은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진정성 없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발전시켜서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된 담화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아베 총리를 비롯한 집권 세력은 전범 후손들로서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역사 갈등은 지속될 것이고, 인권 문제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전향적인 자세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인권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는 관점을 가지고 국제 사회의 여론을 반영하여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덕민: 이어서 이종국 선생님이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종국
李鐘國



짧게 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무라야마 내각에 있었던 자민당 의원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다른 하나는 제언인데, 무라야마 총리는 은퇴하시면서 ‘표면에 나서지 않고 그늘에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라야마 담화는 결국 사회당만의 정책으로 끝났고 지금의 아베 정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민당다운 모습이라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무라야마 총리가 숲 속에서 힘을 좀 더 발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덕민: 지금까지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라야마 총리에게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村山富市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양국 정상들이 문제의 현황과 경위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해결 방안과 가능성에 대해 대화하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정상 간의 대화 전에 담당 사무관들이 충분히 대화하여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선을 먼저 도출하고 정상 간의 대화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

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노 담화를 재검증하고 무라야마 담화를 백지화시키겠다는 모습에서 예상되는 앞으로의 일본에 대한 걱정입니다. 일본 국민들도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국민들은 역사에 대해서 잘 배우지 않고 그다지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전쟁을 치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서 점차 알게 되면서 지금 일본이 위험한 것은 아닌지, 전쟁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안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이 기회를 통해 역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국회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파벌이 있어서 파벌연합정권의 경우, 총리가 하려고 해도 파벌이 반대한다면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추천하는 권한을 자민당의 수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장에게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자민당의 수장에게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사회당의 수장이 어느 정도 제동을 걸었지만 지금은 그 역할을 할 야당이 없습니다. 정당 내에서도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힘을 발휘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일본 헌법에서 명시한 주권자인 국민이 중요합니다. 국민은 무엇이 좋고 나쁜지에 대해 소리 내어 말해야 합니다. 일본의 국민 중 일부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본 내 학생이나 문화인,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시가[滋賀]현 지방선거에

서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었지만 집단적 자위권과 원자력 문제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그 예입니다.

저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당시 희생당한 분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낸 경과를 알게 된다면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강해지면 국회의원들은 당선되기 위해 아베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국민의 의견에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면 국회도 바뀝니다. 국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은 국민에게 있고 일본의 장래는 민주주의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몇 년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도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일 간에 서로 나쁜 점만 이야기하지 말고 좋은 점도 인정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서로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이러한 교류는 물론 아시아 국가 전체가 해야 합니다.

20년 전이었지만 주변의 어떤 분이 저에게 동방에서 배우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동방에게 배우라는 것은 일본과 한국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서로의 문제를 잘 생각하고 곤란을 극복하여 발전된 한일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윤덕민
尹德敏



얼마 전에 방한하셨던 프란체스코 교황은 ‘정의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용서

하는 데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본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일본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무라야마 총리가 한일관계, 나아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들도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연민수
延敏洙



오늘 토론은 대단히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을 계기로 양국 정상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여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잡히기를 기대합니다.

한일관계는 역사 문제와 별개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역사 문제를 풀지 않는 한 앞으로 양국관계의 뿌리 깊은 불신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법적 조치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제도적 틀 속에서 당면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치는 단기적·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양국 국민들의 마음에 있는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상호 간의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상생을 위한 상호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양 국민의 역사인식 공유라는 대전제하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화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승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중단된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를 재개하여 양국의 연구자들이 함께 역사 문제를 연구하고 공동의 역사인식을 도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탕을 둔 올바른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생각한다



1995.4. 김순덕

02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외교적 대응 경위와 향후 대처 방향

조 세 영 _ 동서대학교 특임교수

1.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경위¹⁾

가. 노태우 정부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가 1990년 1월 4일부터 《한겨레신문》에 ‘정신대의 발자취’ 취재기를 연재하고,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되었음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했을 때부터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2월 6일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2월 12일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관방장관이 일본 정부 내 관계 부처에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함으로써 한일 간의 민감한 외교현안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1992년 1월 11일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中央]대학 교수가 방위청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와 일본군‘위안부’의 모집 등을 지시, 감독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발견했다고 《아사히

1)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경위에 관해서는 필자의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朝日]신문》이 보도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여 사실을 인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때까지 정부와 군의 관여를 부정했던 일본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빠졌고, 한국에서는 피해자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관련단체들이 일본의 공식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하며 반일 여론이 급속히 고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월 15일 한국 정부가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1월 16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고, 미야자와 총리는 ‘중군위안부를 모집하고 위안소를 경영하는 일에 구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했다.

미야자와 총리는 1월 17일 국회연설에서 ‘최근의 중군위안부 문제는 정말로 마음 아픈 일로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고, 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만찬에서도 되풀이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으며, 기자회견에서도 ‘그분들이 체험한 쓰라린 고통에 마음이 미어지는 심정’이며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그분들의 고통에 대해 충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과 발언에도 불구하고 보상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해서 미야자와 총리는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을 뿐이다.

한편, 국내적으로 노 대통령은 정부의 관련부처들이 협조하여 진상규명에 노력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계기로 1월 24일 17개 부처 실무진이 참여하는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이 설치되었다.

1992년 7월 6일 가토 관방장관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 조사결과

를 발표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과거 일본 정부의 관여를 시인하면서도, 모집과정의 강제성은 인정하지 않았고 보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보상과는 별도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시사했고, 한일 양국 언론은 기금의 창설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1992년 7월 31일 독자적으로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전면적으로 개입했다고 강조하고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인정과 성의 있는 후속조치 문제는 진전이 없었다.

나. 김영삼 정부

1993년 3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 출범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더 이상 일본 정부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와 후세에 대한 교육을 요구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스스로 피해자 지원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것으로, 김영삼 정부가 ‘도적적 우위에 입각한 자구조치’라고 부를 정도로 커다란 발상의 전환이었다.

한국 측의 선제적인 조치가 발표되고 5개월 후, 일본 정부는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를 발표하여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 등에 일본군 당국의 관여가 있었으며, 일본군‘위안부’의 모집과 이송 등도 대체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8월 5일 일본

군·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양국 간의 외교적 현안으로서는 제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고, 한일 간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수습되는 듯이 보였다.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자구조치'는 일본의 연립정권²⁾과 양심적 지식인들에게도 자극이 되었고, 그 결과 1995년 7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이 발족되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 국민들의 모금 등을 통해 조성한 민간기금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총리의 사과 편지와 함께 위로금 전달, 의료복지지원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피해자와 관련단체는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이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 총리의 사과편지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법적 또는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는 거리가 있고, 위로금과 의료복지지원금도 배상이나 보상의 성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도적 차원의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피해자와 관련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아시아여성기금의 위로금 지급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했다. 그럼에도 일본 측은 1997년 1월 11일 위로금과 의료복지지원금의 수령을 희망하는 7명의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금전 지급을 강행했고, 한국 정부는 아시아여성기

2) 고노 담화가 발표된 1993년 8월 4일은 우연히도 자민당 미야자와 정권의 마지막 날이었다. 이튿날인 8월 5일 자민당은 집권 38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을 내주었고, 대신 8개 야당들이 연합하여 호소가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를 내세운 연립정권을 출범시켰다. 호소가와 정권과 그 뒤를 이은 무라야마[村山] 정권은 자민당 정권보다 중도·진보적인 색채가 강했으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도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금이 대다수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금전 지급을 강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급 철회를 촉구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을 둘러싼 마찰은 김영삼 정부를 거쳐 그 후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 확대되었다.

다. 김대중 정부

1998년 1월 6일 아시아여성기금이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에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총리의 사과편지와 함께 위로금과 의료복지지원금으로 500만 엔을 지급한다는 안내광고였다. 이는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실시에 반대하는 한국의 피해자와 관련단체의 반발을 더욱 심화시켰고, 한국 정부도 광고 게재에 대한 항의와 함께 위로금 지급 중단을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4월 21일 김대중 정부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실시한 피해자 지원조치에 더하여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이 일본의 양심적 세력들의 선의에서 출발된 것이기는 했지만, 국가보상으로 해석되는 것을 피하려는 일본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고, 한국의 피해자와 관련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위로금 지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후유증을 남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13년이 지난 2011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현안으로 재점화되는 형태로 다시 드러나게 된다.

일본 국내적으로는 위와 같이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보수우

과들은 일본군‘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부인하면서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보수우파들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1998년 8월 21일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을 촉구하는 「맥두걸 보고서」가 채택되어 국내외의 주목을 끌었다.

이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피해자와 관련단체로부터 1998년 10월 대통령 방일시 정상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해달라는 요망이 있었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대신 일본의 친분 있는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는 ‘세계의 양심이 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자세는 출범 직후에 국내적 지원조치를 추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아시아여성기금의 위로금 지급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한편, 일본 측에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김영삼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라.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2005년 8월 26일 한일 국교정상화교섭 관련문서의 전면 공개를 계기로 큰 전기를 맞게 되었다. 한일회담 문서공개 민관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이용훈 변호사)는 청구권 문제 교섭과정을 검토해본 결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등 세 가지는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를 한일 간의 외교현안으로 제기하지는 않았다. 법적인 해석론의 차원에서는 일본 측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편으로 정치외교적 현실론의 차원에서는 김영삼 정부 이래의 입장, 즉 일본에 대해 금전적 보상은 요구하지 않으며 외교현안으로서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던 것이다.

이는 정치외교적으로는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었으나 법률적인 논리로는 모순이 존재했고, 이러한 점을 들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9명은 2006년 7월 5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 사이에 법적 해석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한국 정부가 청구권협정 제3조³⁾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3) 청구권협정 제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 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마.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김영삼 정부 이래의 기본 입장은 계속 유지되었고,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 정부 간의 외교현안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06년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상황이 크게 변했다.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하여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하려는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로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한국 정부로서는 청구권협정의 법적 해석에 관하여 일본 정부와 정면으로 다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직후인 9월 일본에 대하여 청구권협정 제3조 1항에 따른 외교협의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이므로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했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다시 한 번 한일 간의 뜨거운 외교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편,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개최되어 온 수요시위가 2011년 12월 14일로 1,000회를 맞았다. 이날 수요시위에서는 위안부 평화비 소녀상이 제막되었다. 일본 정부는 외교시설인 일본 대사관 맞은편에 평화비 소녀상이 설치된 데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철거를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민간 단체에서 설치한 평화비 소녀상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응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4일 후인 12월 18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일외교를 주문하는 국내 여론으로부터의 중압감을 안고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17일 교토를 방문했다. 12월 18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로 정면충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커다란 외교적 타격만 안겨주었다.

이 대통령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자세히 강조하면서 일본 측의 결단을 촉구했으나, 노다 총리는 이미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과 함께 인도적인 견지에서 지혜를 내보겠다는 짧은 답변으로 응대했다. 게다가 노다 총리가 평화비 소녀상의 철거까지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으면 제2, 제3의 평화비 소녀상이 세워질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상 회담이라는 최고의 외교무대에서 두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이처럼 직설적인 공방을 벌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교토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관계가 난기류에 휩싸이기 시작한 가운데 2012년 3월에 방한한 사사에 겐이치로[佐々江賢一郎] 외무사무차관이 비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인도적 차원의 해법’을 타진했다.⁴⁾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의 ‘국가책임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본 측의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청구권협정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 간의 해석의 차이를 청구권협정 제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라고 판결한 상황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본 측

4) 소위 ‘사사에 제안’은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타진의 성격이었으며 정식 제안은 아니었다. 그 내용은 ① 주한 일본 대사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방문하여 위로한다, ② 일본 총리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심정을 표명한다(아시아여성기금 당시의 총리의 편지 등의 형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 ③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하여 인도적인 조치를 취한다(구체적인 방법론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음)는 것이 핵심요소였다.

의 해법을 한국 정부가 수용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단체들도 이른바 ‘사사에 제안’은 과거의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 정부 내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청구권협정 제3조 2항의 중재위원회 회부를 주장하는 입장과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자는 입장이 대립한 채 최종적인 결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2년 10월 말에 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동관 전 청와대홍보수석비서관과 사이토 쓰요시[齋藤勁] 관방부 장관이 수면 아래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타개책을 모색했다.⁵⁾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음으로써 한일관계를 다시 수습하려는 의도에서 측근을 활용하여 일본과의 비공식 교섭을 추진한 것이었다. 그러나 11월에 일본 국회(중의원)가 해산되고 한국은 대통령 선거 국면에 접어들게 되어 수면 아래의 교섭도 중단되었다.⁶⁾ 사이토 전 관방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남아 있던 것은 노다 총리가 피해자들에게 쓸 편지의 문구뿐이었다’고 하고, 이동관 전 수석도 ‘당시 협상은 9부 능선을 넘었었다’고 했지만,⁷⁾ 과연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⁸⁾ 일본은 일본대로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기본입장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변함없는 전제조건이었으며, 연말의 해산 총선거를 앞두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같이 보수우파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5) 이명박(2015), 『대통령의 시간 2008-2013』, 알에이치코리아, 402쪽.

6) 《朝日新聞》 2013년 10월 8일, 사이토 쓰요시[齋藤勁] 전 관방부 장관 인터뷰.

7) 《중앙일보》 2013년 10월 9일.

8)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편지의 표현을 조율할 정도로 거의 합의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양국 정부의 인식과 접근법 자체가 너무 달랐다’고 말했다(《조선일보》 2013년 10월 9일).

있는 여지는 별로 없었다. 한편, 한국으로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타협안도 국내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바.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세는 박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 새 출발의 첫 단추’(2014년 10월 24일 일한의원연맹 대표단 접견)라고 언급한 데서 잘 나타나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한일 양자 차원에서는 2014년 4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양국 외교부 국장급협의를 통해서 일본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5년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일본 측의 자세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고 국제사회도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사실상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정상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 법적 측면의 분석 (한일 청구권협정을 중심으로)

가. 한일 기본조약의 해석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과거의 관계를 청산하는 문제’는 조약 제2조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문안으로 합의되었다.

수교교섭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조약(1910년 8월 22일)이 강압과 불법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따라서 식민지 지배도 처음부터 당연히 불법이고 무효였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일본은 그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이며 식민지 지배도 합법적이었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의 주장은 180도 상반된 것으로 타협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국교정상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입장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애매모호한 표현을 찾아낼 수밖에 없었다.

양국이 합의한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문안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조약들이 체결 당시부터 불법이고 무효였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체결 당시에는 합법이었으나 국교정상화 시점에서는 이미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서로가 자기 입장대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결과, 강제병합과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느냐 불법이었느냐 하는 논쟁은 더 이상 표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일단 봉인된 셈이 되었다. 그러나 과거 조약의 효력에 관하여 서로 180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한일관계의 '기본모순'이 되어 그 후로도 오랫동안 두 나라 사이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이 가장 첨예한 형태로 드러난 것이 2012년 5월 24일 강제징용자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다.⁹⁾

9) 대법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비추어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으며,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부인한 만큼 불법적인 강제동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

나.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

한일 청구권협정(정식 명칭은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제2조 1항에서 양국 및 양국 국민(법인을 포함) 간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¹⁰⁾ 그리고 3항은 이로써 모든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했다.¹¹⁾

한편, 청구권협정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2항 (7)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에는 한국의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였으며,¹²⁾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은 제5항에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반환청구’를 명기하고 있고, 제5항의 상세 설명내용에 (다)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열거하고 있다.

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강제징용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 10) 제2조 1항의 전문(全文)은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1)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 11) 제2조 3항의 전문은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12) 합의의사록 제2항 (7)의 전문은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소위 8개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문제의 초점은 청구권협정의 해결 대상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즉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에 규정된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¹³⁾

한편, 한일 국교정상화교섭 관련문서가 전면 공개된 2005년 8월 26일 한일회담 문서공개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 동포 문제와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청구권 문제 교섭과정을 검토해본 결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등 세 가지는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분명히 밝힌 것이다. 사실 이전에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표명된 적이 있기 때문에¹⁴⁾ 2005년에 특

13) 한편 강제징용자 문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는 달리 미수금뿐만 아니라 전쟁에 의한 피해까지 모두 대일청구요강 8개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해석에 입각해서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1966월 2월 19일)’ 제5조에 ‘한국 국민이 갖고 있는 대일 민간청구권은 이 법률이 정하는 청구권자금에서 보상한다’고 명문화했다. 1975년 7월부터 1977년 6월까지 실시한 제1차 국내보상 조치를 통해 총 103,221건에 대해 총 95억 원의 보상이 이루어졌다.

14) 예를 들어 1992년 1월 18일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언급(《국민일보》 1992년 1월 21일), 1998년 1월 26일 유종하 외무부장관의 국회답변(《한겨레》 1998년 1월 27일), 1998년 2월 23일 정부당국자의 언급(《문화일보》 1998년 2월 23일) 등이 있다.

별히 새로운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에 관하여 일관성이 부족했던 한국 정부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반면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도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이미 해결되었으며 따라서 더 이상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청구권협정의 해석 차이에 주목하여 2006년 7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이다.

다. 일본에서의 소송

1990년대에 들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현안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피해자들과 관련단체들은 일본의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활발하게 소송을 제기했다. 1991년 12월 6일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기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소송을 시작으로 1992년 12월 부산위안부·근로정신대 소송, 1993년 4월 재일한국인위안부 소송으로 이어졌다.¹⁶⁾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 간의 모든 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일본의 법체계 속에서 이와 같은 소송은 예외 없이 원고의 패소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 15) 예를 들어 1991년 12월 13일 외무부가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정부 간에는 일단락되었다고 언급하는 등 한국 정부의 해석에는 일관성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한겨레》 1991년 12월 25일 사설).
- 16) 한국인 피해자 이외에도 중국인 피해자(4건), 타이완 피해자(1건), 필리핀 피해자(1건), 네덜란드인 피해자(1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모두 원고 패소로 끝났다(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참조 <http://wam-peace.org/ianfu-mondai/lawsuit/>).

라. 한국에서의 소송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위와 같이 일본에서의 소송이 모두 패소로 끝나자 피해자와 관련단체에서 무대를 한국으로 옮겨서 소송을 제기해 보자는 문제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5년 8월 한국 정부가 한일 국교정상화교섭 관련문서를 전면공개에 즈음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아 일본 측에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음에도,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 요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9명은 2006년 7월 5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르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경로로 해결하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가 청구권협정에 관하여 일본과의 법적 해석 차이가 존재함에도 제3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不作爲)는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하여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하려는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로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물론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국내적 지원조치의 실시(1993년 및 1998년)를 비롯하여 그간 국내외적으로 기울인 노력을 재판부에 대해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한국 정부가 아무리 그러한 노력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양국 정부의 법적 해석이 180도 상반된 상황임에도 ‘청구권협정 제3조가 규정한 절차에 따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로서는 청구권협정의 법적 해석에 관하여 일본 정

부와 정면으로 다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직후인 9월 일본에 대하여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외교협의를 정식으로 요청했고 11월에는 재차 독촉까지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이므로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3. 외교적 측면의 분석

가. 초기단계

1992년 7월 6일 일본의 가토 관방장관은 6개월간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의 일본 정부의 관여가 있었음이 인정되었다고 말했지만, 모집과정에 강제성이 있었거나 속여서 데려간 일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보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이 되었으므로 보상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우리의 사죄의 마음을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각계의 의견을 들어 성의를 갖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 언론은 보상조치에 대신하여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폭넓은 사업을 위한 기금의 창설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¹⁷⁾

일본 측의 발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일본 정부가 군대위안부 문제에 관여했음이 재확인되었으며, 앞으로 일본 정부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을 촉구했다. 일본 측의 조사결과 발표와는 별도로 1992년 7월

■ 17) 《경향신문》 1992년 7월 10일, 《한겨레》 1992년 8월 28일.

31일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여, 일본군‘위안부’ 관련 정책의 수립은 물론 위안소의 설치와 모집, 수송, 관리 등 모든 면에 걸쳐 일본군이 전면적으로 개입했다고 결론짓고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나. 한국 정부의 제1차 국내지원조치(1993년 3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년 2월은 1991년 말부터 외교현안으로 대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있던 시점이였다.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한국의 입장과, 좀처럼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서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 사이에 접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정부 간의 마찰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들 사이의 감정까지도 악화되어가는 상황이었다.

양국 정부가 청구권협정을 둘러싸고 법적인 논쟁을 벌인다고 해도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운 문제였다. 그렇다고 일본을 설득해서 외교적인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 출범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 커다란 발상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다.

1993년 3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더 이상 일본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조치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조치는 일시금 500만 원과 함께 매월 15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임대주택 입주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¹⁸⁾

■ 18) 이러한 지원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1993년 6월 11일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

대신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후세에 교육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금전적 보상을 계속 요구하기보다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스스로 피해자 지원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김영삼 정부는 이를 ‘도덕적 우위에 입각한 자구조치’라고 불렀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자구조치가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법적 책임 문제를 양보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 책임이 일본 측에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를 둘러싸고 일본과 외교적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국내지원조치라는 자구조치를 통해 대승적으로 대처해나간다는 발상이었기 때문에 ‘도덕적 우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측에서는 한국 정부가 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조치를 국내적으로 실시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다.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발표(1993년 8월)

한국 정부는 제1차 국내지원조치 실시 후 일본 측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만을 강조하고 진상규명에 관한 발표내용은 외교교섭의 대상이 아니라 일본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취했다.¹⁹⁾ 한국 정부가 이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

생활안정지원법’이 제정되었다.

19)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일본 정부가 2014년 6월 20일 발표한 고노 담화 검증 결과(‘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間のやりとりの経緯’)에도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불교섭 입장에도 불구하고 담화 문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해 왔고,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일본 측과의 의견교환에 응했다.

고 나오자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진상규명을 비롯한 가시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8월 4일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를 발표하여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 등에 일본군 당국의 관여가 있었으며, 일본군‘위안부’의 모집과 이송 등도 대체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고노 담화를 발표하자 한국 정부는 8월 5일 이것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양국 간의 외교적 현안으로서는 제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고,²⁰⁾ 3년 가까이 한일관계의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비로소 수습의 단계에 접어드는 듯이 보였다.

라. 일본 측의 아시아여성기금 사업 추진(1995~2002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지구조치는 일본의 연립정권과 양심적 지식인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다. 고노 담화까지 발표되자, 비록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외교적인 보상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으로서도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일본 내에 확산되기 시작했고,²¹⁾ 이러한 움직임은 1995년 7월 아시아여성기금의 발족으로 구체화되었다.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14/_icsFiles/afieldfile/2014/06/20/20140620houkokusho_2.pdf 참조)

20) 《동아일보》 1993년 8월 5일

21) 《아사히[朝日]신문》은 1993년 3월 20일자 사설(“일본의 도의가 시험받고 있다”)에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한국 측의 태도에 대해 안이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어두운 역사에 정면으로 마주서는 도의를 일본이 가지고 있는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강조했다(《한국일보》 1993년 3월 21일).

또한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전 총리는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김영삼 대통령의 대일외교 자세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결단에 대해 (일본 측의) 자주적 판단에 의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서울신문》 1993년 4월 29일)

아시아여성기금은 민간차원에서 일본 국민 등의 모금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한국, 중국, 동남아, 네덜란드 등의 피해자들에게 일본 총리의 사과 편지와 함께 위로금과 의료복지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지원 금액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위로금 200만 엔과 의료복지지원금 300만 엔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의 국내사정과 청구권협정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볼 때 피해자와 관련단체가 바라는 최선의 해결책(법적 책임 인정, 공식 사죄, 보상 등)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되기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한 차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한국의 피해자와 관련단체는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이 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더 이상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으로 법적인 문제는 종결되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부가 상당한 예산을 부담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하면 서도 표면적으로는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민간조직이 지원사업을 담당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일본 총리의 사과 편지 내용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법적 또는 공식적인 책임 인정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했으며,²²⁾ 위로금과 의료복지지원금도

22) 일본 총리의 사과 편지는 ‘중군위안부 문제는 당시 구일본군의 관여하에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성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입니다. 저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소위 중군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심심양면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무거움으로부터도 미래를 향한 책임으로부터도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죄와 반성의 뜻에 입각하여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며 이것을 후세들에게 바로 전달하는 것이 동시에

어디까지나 인도적 차원의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피해자와 관련단체가 거부 입장을 밝혔던 것이었다.²³⁾ 게다가 1996년 4월 제52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을 권고하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한국의 피해자와 관련단체가 아시아여성기금에 반대하는 입장을 더욱 강화시켰다.²⁴⁾

이처럼 한국의 피해자와 관련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피해자와 관련단체가 총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아시아여성기금의 위로금 지급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했다.²⁵⁾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의 실시 방침을 고수

부조리한 폭력 등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평온하시기를 중심으로 비는 바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 23) 아시아여성기금의 위로금 지급 사업은 《아사히신문》 사설(1998년 10월 11일)이 지적하듯이 ‘국가보상에 비해 국가의 책임이 결여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결점이 있지만, 우선 최소한의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 사설이 ‘일본의 국고지출이라는 점에서 이미 실질적으로는 국가보상에 근접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려는 일본 정부의 소극적 자세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국가 보상책임의 부인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고, 그러한 측면 때문에 한국의 피해자와 관련단체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 24)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호적인 일본의 중도·진보 세력의 내부에서도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을 둘러싸고 ‘기금파’와 ‘반(反)기금파’의 대립이 존재했다. 반기금파는 기금의 사업이 국가보상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도의적 보상의 형태로 타협했다는 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아시아여성기금 활동의 문제점과 기금파/반기금파의 대립에 대해서는 熊谷奈緒子(2014), 『慰安婦問題』, 筑摩書房, 127쪽 이하 및 141쪽 이하 참조).
- 한편 미키[三木] 전 총리의 부인인 미키 무쓰코[三木睦子] 여사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에 일본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데 대해 ‘허무함을 느낀다’고 하면서 아시아여성기금의 발기인대표를 사임하기도 했다(《한국일보》 1996년 5월 4일).
- 25) 일본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에 대해 당초 한국 정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

했고, 아시아여성기금 측은 위로금과 의료복지지원금의 수령을 희망하는 일부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1997년 1월부터 예정대로 금전 지급을 강행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모두 61명의 한국인 피해자에게 위로금과 의료복지지원금을 지급했고 2002년 5월 한국에 대한 사업 실시를 종료했다.²⁶⁾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은 당초의 좋은 의도에도 한국의 피해자와 관련단체 다수의 이해를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실시됨으로써 한일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 사이의 반목과 마찰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한국 국내에서도 아시아여성기금의 금전 수령 여부를 둘러싸고 피해자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기도 했고, 피해자들과 관련단체 사이에도 마찰이 초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마. 한국 정부의 제2차 국내지원조치(1998년 4월)

아시아여성기금은 한국 정부와 피해자, 관련단체의 반대에도 1998년 1월 한국의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하고 위로금과 의료복지지원금 지급 사업을 계속했다. 일본 측의 이러한 행동은 한국의 피해자와 관련단체의 반

나 피해자와 관련단체의 반발이 심해지자 반대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고 있다(2014년 6월 20일 고노 담화 검증결과 발표 자료). 그러나 일본 측 발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취할 조치(고노 담화에 대한 후속조치)는 일본이 자주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한국 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1995년 6월 14일 아시아여성기금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 한국 외무부 당국자가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된 성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고 논평(《연합뉴스》 1995년 6월 14일)한 것은 일본 측의 사업에 대한 동의나 합의의 의미가 아니었다.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이 발표된 이후 한국의 피해자와 관련단체들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자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피해자와 관련단체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 후 일관되게 아시아여성기금의 위로금 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했던 것이다.

26) 일본 정부의 2014년 6월 20일 고노 담화 검증결과 발표 자료 참조.

발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이러한 여론을 배경으로 1998년 4월 21일 김대중 정부는 1993년의 제1차 국내지원조치에 이어서 3,150만 원(민간모금액 650만 원은 별도)의 지원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국내지원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금액은 피해자들이 아시아여성기금의 위로금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아시아여성기금의 지원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제2차 국내지원조치를 결정하면서 일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김영삼 정부의 방침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제2차 국내지원조치는 당초 4월 14일에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일본에 대한 금전적 보상 불요구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정이 보류되었다가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여 통과되었다.²⁷⁾ 이처럼 금전적 보상 불요구 방침에 대해 여론의 반발이 존재했음에도 김대중 정부는 기존 정부 방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자세를 견지했다.

4. 현재의 상황과 향후 대처 방향

가. ‘법적 트랙’과 ‘정치외교적 트랙’

(1) ‘법적 트랙’

앞서 설명하였듯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는 우선 일본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도되었으나 결국 모두 패소하고 말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단체는 일본 법원을 통해서도 더 이상 법적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본에서의 소송 제기를 단

■ 27) 《매일경제》 1998년 4월 15일.

넘하고 2006년 7월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을 청구했고 2011년 8월 승소 판결을 얻어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한국 정부의 부작위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판단에 대해서는, 비록 이 문제가 ‘고도의 정치행위의 영역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사법자체가 요구되는 분야에 해당한다’고 한 소수의견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청구권협정 자체의 규정(제3조)에 비추어 볼 때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즉,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의 해석이 명백히 서로 상충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협정의 해석의 차이’를 청구권협정 제3조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법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 사건의 피고에 해당하는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당연히 구속되며 판결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부작위 상태를 해소하는 행동, 즉 청구권협정 제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행동(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협의 및 중재위원회 회부)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인 2011년 9월 외교공문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정식으로 ‘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거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에서 회답이 없자 11월에 재차 독촉하는 외교공문을 발송했으나 일본 측의 자세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그다음 수순으로 청구권협정 제3조 2항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는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 2011년 말부터 한국 정부가 중재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²⁸⁾가 나오기도 했으나, 중재위원회 회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 28) 《세계일보》 2011년 12월 19일.

찬성론은 우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 있는 이상, 한국 정부로서는 판결이 명하는 바를 이행함으로써 부작위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한다. 만일 중재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고 다른 방안에 의한 해결(후술하는 ‘정치외교적 트랙’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더라도, 여전히 청구권협정 제3조 2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상태’는 남아 있게 되고, 만일 피해자나 관련단체가 헌법재판소 판결의 불이행 문제를 제기하면 다시 한 번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문제 제기 내용과 재판부의 위헌판결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국내 여론의 강한 반발과 비판이 대두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서 ‘이제 ... 일본 정부의 자발적 사죄 및 구제조치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 청구가 최종적으로 부인되는 결론이 나올 위험성도 가까이 감수하겠다고 한다면 피청구인으로서의 피해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이 소송이라는 형태로 명확한 요구를 하고 있는 이상,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행동, 다시 말해 판결 내용을 이행함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한편, 중재위원회 회부에 반대하는 쪽은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설사 한국 정부가 중재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더라도 일본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 구성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재위원회 회부라는 강경책은 한일 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며, 일본 측이 대항조치로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흔히 2011년 8월의 헌법재판소 판결의 핵심 요지

를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과 적극적인 외교교섭을 추진하는 등 열심히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이라고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정확한 내용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법적인 해석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경우의 해결절차를 규정한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부작위로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청구권협정에 관하여 어느 쪽의 해석이 맞는지 법적인 논쟁을 해서 결론을 내라는 취지이지,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내라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자칫 지나친 법 기술적 접근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2) ‘정치외교적 트랙’

‘정치외교적 트랙’이란 쉽게 말해서 (1)항과 같은 법적 논쟁이 아니라, 외교적 차원에서 협상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태우 정부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처음 외교현안으로 대두되자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함께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외교적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법적으로는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가진 일본 정부는 한국의 요구에 쉽게 응할 수 없었다.

‘성의 있는 조치’를 둘러싼 힘겨운 줄다리기 속에서 김영삼 정부는 발상

의 전환을 하여 일본에 대해 진상규명은 계속 요구하되 금전적 보상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 측이 해야 할 응분의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태도를 취했다. 다시 말해 일본과 외교적 협상을 벌이는 노선을 버리고 한국이 자주적으로 국내적인 지원조치를 취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라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더 이상 외교적 협상은 하지 않고 도덕적 우위에서 한국은 한국의 할 일을 할 것이므로 일본은 일본의 할 일을 하라는 의미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두고 일본과 외교적 협상을 하지 않고 한국의 독자적인 국내 지원조치로 대처하겠다는 이러한 노선은 그 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어왔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에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항하는 형태로 제2차 국내지원조치를 실시하면서도 일본에 대한 외교적 협상은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8월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의 해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과의 외교적 협상은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했다. 따라서 일본 측의 아시아여성기금 사업도 일본의 자주적 판단에 따른 일방적 조치였으며 한국과의 외교적 협상의 결과가 아니었다. ‘정치외교적 트랙’을 ‘외교적 협상 노선’과 ‘자주적 조치 노선’으로 구분한다면 노태우 정부는 전자에,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임 정부들처럼 ‘정치외교적 트랙’의 ‘자주적 조치 노선’을 유지하던 이명박 정부는 2011년 8월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법적 트랙’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판결 직후인 9월과 11월에 ‘법적 트랙’에서 일본에 대해 청구권협정 제3조 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구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교적 협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두고 청구권협

정의 해석이 서로 상반되는 점에 관하여 따져보자는 의미로서 ‘법적 트랙’에 속하는 것이며, ‘성의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별이는 ‘정치외교적 트랙’의 외교적 협상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일본 측이 제3조 1항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자 이명박 정부는 ‘법적 트랙’에 따른 제3조 2항의 중재위원회 회부를 검토했으나 찬반양론의 대립 속에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퇴임 직전에 갑자기 ‘정치외교적 트랙’의 ‘외교적 협상 노선’으로 방향을 바꾸어 비공식 채널을 통한 외교적 협상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사실 ‘정치외교적 트랙’은 외교에서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정치외교적 트랙’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한일 양국 정부가 나름대로 ‘정치외교적 트랙’에 의한 해결을 시도했으나 그것이 모두 벽에 부딪혀 좌절했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지난 20년의 경위에서 보듯이 한국은 1·2차 국내지원조치 실시를 통해 대승적 해법을 시도했으나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그 의미가 부정되었고,²⁹⁾ 일본은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서 우회적인 해법을 시도했으나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이해를 얻지 못하고 좌절했다. 이처럼 외교적 상식에 따른 ‘정치외교적 트랙’의 해결 노력이 모두 좌절한 상황에서,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명백히 ‘법적 트랙’에 따른 행동을 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외교적 트랙’의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법(그것이 사사에 제안이든 무엇이든)을 시도하는 것이 현명한가 하는 점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29) 헌법재판소는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사회보장적 차원의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면서, 청구권협정에 대한 양국 정부의 법적 해석이 서로 상반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권협정 제3조가 규정한 절차에 따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나. 현재의 상황

현재 한국 정부는 2014년 4월부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국장급 협의를 통해 일본에 대해 ‘성의 있는 조치’ 또는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요구내용, 즉 ‘성의 있는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 현재 진행 중인 국장급 협의의 성격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천명하고 그 후 한국 정부가 계속 견지해온 방침, 다시 말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자주적 조치 노선’을 이탈하여 한일 간의 ‘외교적 협상 노선’에 의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며, ‘법적 트랙’이 아니라 ‘정치외교적 트랙’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교적 협상 노선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1993년 이래의 ‘자주적 조치 노선’(불교섭 원칙)을 이탈한데 따른 문제점이다. 한국 국내적으로는 아직 이러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으나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비한 정부의 설명 논리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일단 국장급 협의에 응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의 이러한 궤도 변경에 대해 불만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본의 보수우파들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성의 있는 조치’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지낸 노가미 요시지[野上義二]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한국에 품는 강한 불만은 ‘골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³⁰⁾

30) 《중앙일보》 2014년 12월 18일.

둘째, 현재 일본의 국내 상황(아베 정권의 존재와 사회적인 보수우경화 흐름) 속에서 외교적 협상을 통하여 과연 얼마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한국 국내에서는 이른바 ‘사사에 제안’과 같은 조치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으나, 현재 일본의 분위기는 사사에 제안과 같은 수준조차도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정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의 좌장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결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일본 고쿠사이[國際]대학 총장은 인터뷰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법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을 다시 시도했으면 한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 그렇게 안 되면 일본으로선 화해를 기브 업(단념)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³¹⁾ 아마도 이것이 현재 일본의 보수층이 생각하는 최대치일 것이며, 일본은 아시아여성기금과 유사한 조치를 다시 한 번 시도할 테니 피해자와 관련단체 및 국내여론에 대한 설득은 한국 정부가 책임져 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적 교섭을 계속하는 것은 협상의 구도 측면에서도 한국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그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더욱 큰 반발을 초래하고 양국 국민감정상의 마찰과 대립을 더욱 깊게 할 우려도 있다.³²⁾

셋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 이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보장과, 일본 대사관 앞의 평화비 소녀상의 철거, 국

31) 《중앙일보》 2014년 12월 19일. 한편 기타오카 총장은 아베 총리가 2015년 전후 70주년에 즈음하여 발표할 담화의 내용을 검토할 전문가회의의 실질적 책임자(좌장대리)로 임명되었다(《연합뉴스》 2015년 2월 19일).

32) 현재 일본의 다수 여론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 ‘아사히신문’ 보도 등 부당한 주장으로 일본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국제적으로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고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조치는 필요 없다는 분위기가이므로, 한일 간의 외교적 교섭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거꾸로 일본 국내적으로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제무대에서의 문제제기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한국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넷째,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서 한일 정부 간의 외교협상으로 도출된 합의안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단체가 납득하고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른바 ‘사사에 제안’에 대해서 당시 피해자와 관련단체는 어떤 반응이었는지는 1장의 ‘마’항에서 이미 설명했다. 노가미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사사에 제안’으로 정리될 것 같았으면 그때 정리됐을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이 어떤 제안을 내놓아도 한국의 시민단체 정대협이 반대할 텐데 이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³³⁾ 현재 한국에는 사사에 제안과 같은 해법에 대해 긍정적인 논조가 일부 존재하지만, 정작 그러한 합의안이 나왔을 때 여론의 전반적 분위기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다. 향후 대처방향

위와 같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자는 ‘법적 트랙’에 따라 중재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중재위원회 회부를 요청해도 일본이 응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해소하는 절차차차 완료하지 않은 채 ‘정치외교적 트랙’에서 외교적 협상에 의한 타협을 시도한다면 결코 피해자들과 국내여론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33) 《중앙일보》 2014년 12월 18일.

노가미는 반대의 주체를 정대협으로 특정했으나, 아시아여성기금이나 사사에 제안 등에 대한 반대는 비단 정대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민여론 일반에 넓게 공유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결국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한일 양국의 상반된 해석이다. 속 시원한 결론이 나기 어려운 법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 현실적인 지원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과거 한일 양국 정부가 각자 독자적인 조치를 실시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와 청구권협정의 법적 해석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더 이상 이 핵심 쟁점을 우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정부 간 협의에서 일본이 제시하는 어떤 제안도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대전제 위에서 있다는 점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한일 양국 정부 간에 외교적 협의를 통한 해결책이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의 내용은 청구권협정의 법적 해석에 관하여 일본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킨 반면, 한국은 자신의 입장을 양보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일본 정부처럼 시대의 변화나 새로운 문제의 등장에도 과거의 법적 해석을 일체의 예외 없이 고집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어 더 이상 법적 책임이 없다는 해석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집착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물론 국가 간의 조약에 대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무결하다는 전제하에 어떠한 예외나 변화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직된 태도는 문제다.

거꾸로 한국 정부는 청구권협정의 법적 해석에 대한 입장에 일관성이 부족했다. 그나마 2005년 8월에 민관공동위원회의 이름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으나 지금도 이 입장을 철저하게 견지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전시 성적 노예의 동원이나 여성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국제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과거에 부족했던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이제라도 확고하게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더욱이 상대방인 일본이 1965년 이래 자신들의 법적 해석을 교조주의적으로 지키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법적 해석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을 소홀히 한 채 일본 측의 법적 입장을 용인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외교적 타협은 피해자들과 국민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법적 트랙’에 따른 중재위원회 회부가 필요하다고 필자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³⁴⁾

참고문헌

- 요시미 요시아키, 남상구 옮김(2013), 『일본군‘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역사공간.
 조세영(2014),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熊谷奈緒子(2014), 『慰安婦問題』, 筑摩書房.
 大沼保昭(2007), 『「慰安婦」問題は何だったのか』, 中央公論新社.
 村山富市,和田春樹(2014), 『慰安婦問題とアジア女性基金』, 青灯社.
 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2013), 『日本軍「慰安婦」問題すべての疑問に答えます。』, 合同出版.

34) 반면 강제징용자 문제는 2005년 8월 민관공동위원회에서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한국 정부가 1975년의 제1차 국내보상조치에 이어 2008년부터 제2차 국내보상조치를 실시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는 달리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해서는, 2012년 5월의 대법원 판결이 갖는 법률적·논리적 타당성을 존중하면서도, 적어도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특히 장차 원고 측의 요청에 의해 일본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시되어 한일 간에 중대한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조약의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조치(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지원조치 검토 등)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생각한다



03

일본 정부의 담화문 및 공동선언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

-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 -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되었기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의 결과, 장기적이고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었으며 많은 위안부가 존재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 운영되었으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하였으나 그 경우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지(戰地)로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외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한반도는 일본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어쨌든, 본건은 당시 군의 관여 아래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떠나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お詫び)와 반성의 심정을 말씀드린다. 또 그와 같은 마음을 일본국이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는 지식인들의 의견 등도 구해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역사의 진실을 피하는 일없이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나가고자 한다. 우리들은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영원히 기억해 똑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표명한다.

또한 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어 정부로서도 앞으로 민간연구를 포함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나가고자 한다.

1993년 8월 4일

무라야마 총리 담화

-전후(戰後) 50주년 특별담화-

지난번 대전이 종말을 고한 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전쟁에 의해 희생된 내외의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 만감에 가슴이 저미는 바입니다.

패전 후 일본은 저 불타버린 벌판에서 수많은 곤란을 극복하여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쌓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자량이며, 이를 위하여 쏟아낸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지(英知)와 꾸준한 노력에 저는 마음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지원과 협력에 대하여 다시금 심심한 사의를 표명합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근린제국, 미국 및 구주제국과 오늘날과 같은 우호관계를 쌓게 된 것을 마음으로 경하하는 바입니다.

평화롭고 풍요한 일본이 된 오늘, 우리들은 자칫하면 이 평화의 존엄성과 감사함을 잊기 쉽습니다. 우리들은 과거의 잘못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게 가르쳐 전해야만 합니다. 특히 근린제국의 사람들과 손을 잡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국과 깊은 이해와 신뢰에 바탕을 둔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특히 근현대 시기의 일본과 근린 아시아제국의 관계에 관한 역사연구를 지원하고, 각국과의 교류의 비약적인

확대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기둥으로 평화우호교류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전후 처리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나라와 이들 각국의 신뢰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저는 계속 성실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전후 50주년의 계기를 맞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은 지난날을 돌아보며 역사의 교훈을 얻고, 미래를 향하여 인류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그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에 국책(國策)을 그르쳐서 전쟁의 길을 걸어 국민을 존망(存亡)의 위기에 빠뜨렸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심할 여지없는 이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여기에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사죄[お詫び]의 심정을 표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역사가 가져온 내외의 모든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패전의 날로부터 5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나라는 깊은 반성을 통해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배척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

제협조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평화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확산시켜나
가야만 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유일의 피폭국으로서의 체험을 바탕
으로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위하여 핵 비확산 체제의 강화 등 국제
적인 균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속죄이며, 희생된 분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신의보다 의지할 만한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념할 만
한 날에 즈음하여 신의를 시정(施政)의 근간으로 할 것을 내외에 표명하
면서 저의 맹세의 말로 대신코자 합니다.

내각총리대신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1995년 8월 15일

간 총리 담화

금년은 한일관계에서 커다란 전화점이 되는 해입니다. 정확히 100년 전 8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이후 36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군사적 배경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인정하는 겸허함을 갖고, 스스로의 과오를 되돌아보는 것에 솔직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받은 쪽은 이를 쉽게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여기에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の気持)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향후 100년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실시해온 이른바 사할린 한국인 지원,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봉환 지원이라는 인도적 협력을 이후에도 성실히 실시해갈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하여 반출되어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조 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에 대해,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까운 시일에 이를 반환하고자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2천 년에 걸친 활발한 문화 교류 및 인적 왕래를 통해 세계에 자랑할 만한 훌륭한 문화와 전통을 깊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양국의 교류는 매우 중층적이며 광범위하고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양국 국민이 서로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우정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한 것입니다. 양국의 경제관계 및 인적 교류의 규모는 국교정상화 이래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 서로 절차탁마하면서 경제적 결합은 매우 공고해졌습니다.

한일 양국은 이제 금번 21세기에서 민주주의 및 자유,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하며 긴밀한 이웃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양국관계에 그치지 않고, 장래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염두에 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세계경제 성장과 발전, 그리고 핵군축 및 기후변화, 빈곤 및 평화구축 등과 같은 지구규모의 과제까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폭넓게 협력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파트너 관계입니다.

저는 이러한 커다란 역사의 전환점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유대가 보다 깊고, 보다 확고해지는 것을 강하게 희구함과 동시에, 양국 간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결의를 표명합니다.

내각총리대신
간 나오토[菅直人]
2010년 8월 10일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1.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은 일본국 국민으로서 1998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체재 중 오부치 게이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의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현재의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회담의 결과,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하였다.

2.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사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 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를 함께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양국 정상은 과거 오랜 역사를 통하여 교류와 협력을 유지해온 한일 양국이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각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협력관계가 서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한국이 국민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비약적인 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하고, 번영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하에서 전수방위 및 비핵 3원칙을 비롯한 안전보장정책과 세계경제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지원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수행해온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양국 국민 간의 광범위한 교류와 상호 이해에 기초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4. 양국 정상은 양국 간의 관계를 정치, 안전보장, 경제 및 인적·문화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균형되고 보다 높은 차원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나갈 필

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의 파트너십을 단순히 양자 차원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또한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요한 생활과 살기 좋은 지구환경을 지향하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진전시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정상은 20세기의 한일관계를 마무리하고, 진정한 상호 이해와 협력에 입각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공통의 목표로서 구축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가기 위하여 이 공동선언에 부속된 행동계획을 작성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정부가 앞으로 양국의 외무장관을 책임자로 하여 정기적으로 이 한일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력의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5. 양국 정상은 현재의 한일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양국 간의 협의와 대화를 더욱 촉진시켜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상 간의 지금까지의 긴밀한 상호 방문·협의를 유지·강화하고 정례화해나가기로 하는 동시에, 외무장관을 비롯한 각 분야의 각료급 협의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간 각료간담회를 가능한 한 조기에 개최하여 정책 실시의 책임을 갖

는 관계각료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을 설치키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지금까지의 한일 양국 국회의원 간 교류의 실적을 평가하고, 한일·일한의원연맹의 향후 활동 확충 방침을 환영하는 동시에, 21세기를 담당할 차세대 의 소장의원 간의 교류를 장려해나가기로 하였다.

6. 양국 정상은 냉전 후의 세계에 있어서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사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참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과 과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연합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 강화, 국제연합 사무국 조직의 효율화, 안정적인 재정기반의 확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의 강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에 대한 협력 등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이 일치하였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기여와 역할을 평가하고, 금후 일본의 그와 같은 기여와 역할이 증대되는 데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균축 및 비확산의 중요성, 특히 어떠한 종류의 대량파괴 무기일지라도 그 확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러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의 안보정책협의회 및 각급 차원의 방위교류를 환영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양국이 각각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를 견지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간 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7.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보다 건설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확고한 안보체제를 유지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4자회담의 순조로운 진전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 간에 서명된 '제네바 합의' 및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를 북한의 핵 계획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이 안보리를 대표하여 표명한 우려 및 유감의 뜻을 공유하는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한국, 일본 및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북한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연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각급 차원에서의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8. 양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경제체제를 유지·발전시키고, 또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아시아 경제의 회복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 각각 안고 있는 경제적 과제를 극복하면서, 경제분야의 균형된 상호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정상은 양자 간의 경제정책협의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WTO, OECD, APEC 등 다자무대에서의 양국 간 정책협조를 더욱 촉진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금융, 투자, 기술이전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지금까지의 일본의 대한국 경제지원을 평가하는 동시에, 한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였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아시아의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경제적 지원에 관해 설명하는 한편, 한국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재정 투융자를 적절히 활용한 일본 수출입은행의 대한국 용자에 관하여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의 커다란 현안이었던 한일 어업협정교섭이 기본 합의에 도달한 것을 마음 깊이 환영하는 동시에,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을 기초로 한 새로운 어업질서하에 어업분야에서의 양국 관계의 원활한 진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이번에 새로운 한일 이종과세방지협약이 서명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무역·투자, 산업기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노·사·정교류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교류를 더욱 발전시켜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한일 사회보장협정을 염두에 두고, 장래 적절한 시기에 서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의견 교환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9. 양국 정상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국경을 초월한 각종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지구환경 문제, 특히 온실가스 배출 제한, 산성비 대책을 비롯한 제반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일 환경정책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조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동시에, 마약·각성제 대책을 비롯한 국제조직범죄 대책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0. 양국 정상은 이상 각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기초는 정부 간 교류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 간의 깊은 상호이해와 다양한 교류에 있다는 인식하에 양국 간의 문화·인적 교류를 확충해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을 위한 양국 국민의 협력을 지원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문화 및 스포츠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연구원, 교사, 언론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및 지역 간 교류의 진전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교류·상호이해 촉진의 토대를 조성하는 조치로서 이전부터 추진해온 사증제도의 간소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일 간의 교류 확대와 상호이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고생 교류사업의 신설을 비롯하여 정부 간의 유학생 및 청소년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동시에, 양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 관광사증제도를 1999년 4월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재일한국인이 한일 양국 국민의 상호교류·상호이해를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양국 간 협의를 계속해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한일포럼 및 역사공동연구의 촉진에 관한 한일 공동위원회 등 관계자에 의한 한일 간 지적 교류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이러한 노력을 계속 지지해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내에서 일본 문화를 개방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하였으며, 오부치 총리대신은 이러한 방침이 한일 양국의 진정한 상호 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환영하였다.

11.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대신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이 양국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더욱 높은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공통의 신념을 표명하는 동시에, 양국 국민에 대하여 이 공동선언의 정신을 함께하고,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의 구축·발전을 위한 공동의 작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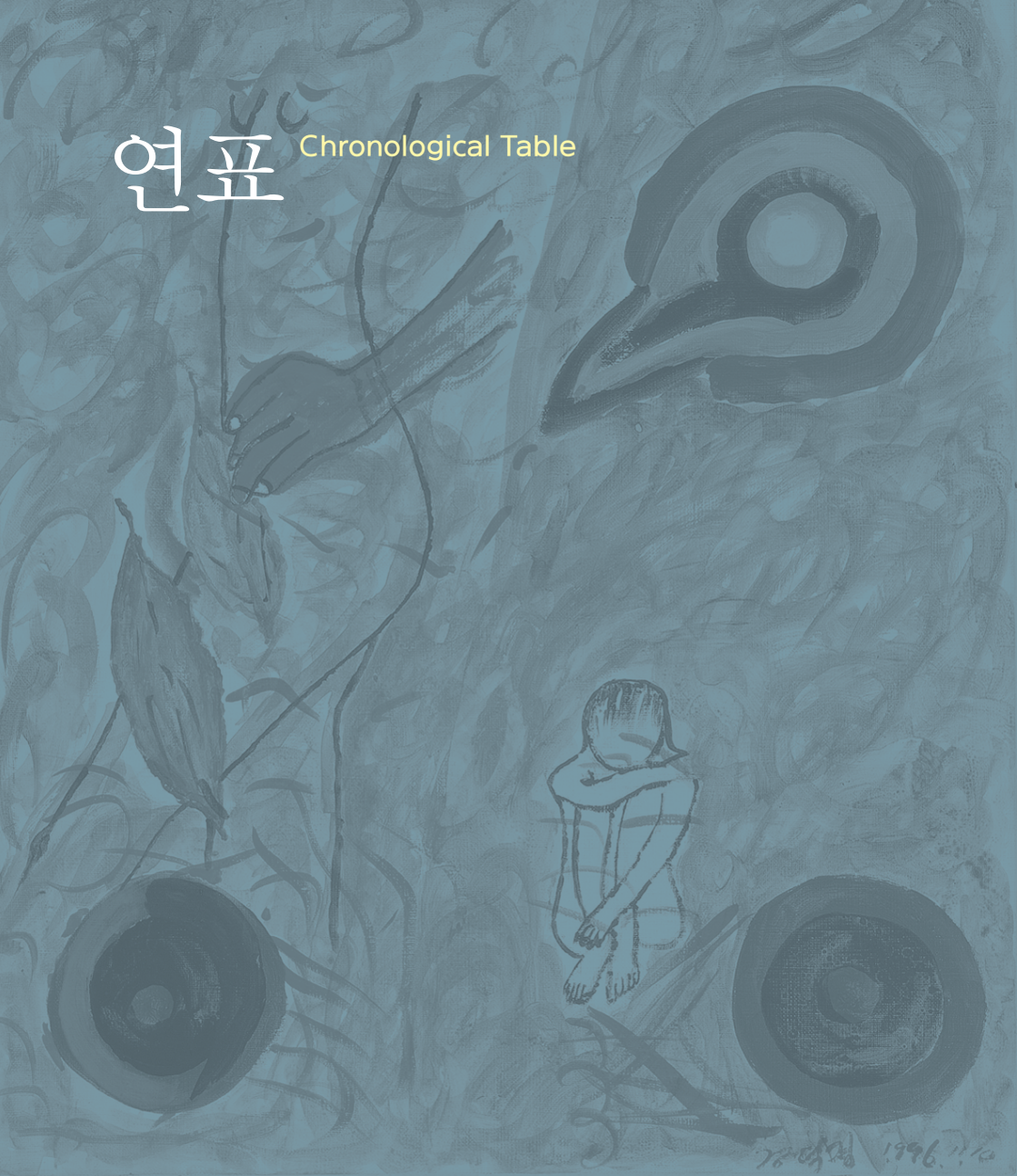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金大中)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오부치 게이조[小渊惠三]

1998년 10월 8일, 도쿄

연표

Chronological Table



강덕경 1996. 11. 10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1	1990. 1. 4 ~1. 24	윤정옥(尹貞玉) 이화여자 대학 교수「정신대취재기」 《한겨레신문》에 연재		
2	1990. 5. 24	노태우 대통령 방일		
3	1990. 6. 6		참의원 예산위에서 노동 성국장 “민간업자가 그러 한 사람을 데리고 간 것 으로 보이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정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	
4	1990. 7. 10	‘정신대연구회(挺身隊研 究会)’ 발족		
5	1990. 10. 17	37개 여성단체 한일 정부에 공개서한을 송부		
6	1990. 10. 29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22명이 ‘사과’와 ‘보상’을 요 구하며 도쿄[東京]지방재 판소에 제소		
7	1990. 11	37개 여성단체, ‘한국정신 대문제대책협의회’ 발족		
8	1990. 12. 10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대표, 일본 방문, 일본변 호사연합회에 인권구제를 요청	‘일본의 전후책임을 밝히는 모임(日本の戦後責任を ハッキリさせる会)’ 발족 집회 개최	
9	1991. 1. 8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가이후[海部] 수상 방한에 맞춰 성명발표		
10	1991. 1. 19		도쿄 구단(九段)YWCA에 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従軍慰安 婦問題を考える会)’ 결성	
11	1991. 4. 24 ~4. 28		전후책임을 밝히는 모임, 변호단, 방한하여 실태조사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12	1991. 5. 28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가이후 총리에게 공개서한과 정식답변 요청		
13	1991. 5. 31 ~6. 2		한국·일본·북한 여성 세미나 개최, 「제1회 아시아 평화와 여성을 위한 역할(第一回アジア平和と女性のための役割)」 도쿄, 고베[神戸]에서 개최, 공동으로 보상을 요구할 것을 확인	
14	1991. 8. 14	김학순(金學順) 씨, 서울 기자회견에서 증언		
15	1991. 8. 17 ~8. 20		일본의 전후책임을 밝히는 모임, 한국에서 청취 조사	
16	1991. 8. 24		오사카[大阪]시에서 시민단체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실태조사와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 개최	
17	1991. 8. 27	이상옥(李相玉) 외무장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지속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대처해나갈 것임을 밝힘	외무성 다니노[谷野] 아시아국장,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완료되었다고 답변	
18	1991. 11. 6		사회당여성국, 심포지엄 「일본의 전후책임과 일본군'위안부' 문제(日本の戦後責任と従軍慰安婦問題)」 개최	
19	1991. 11. 13		도쿄에서 일본 거주 한국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우리 네트워크 결성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20	1991. 11. 26 ~11. 27	「제2회 아시아평화와 여성을 위한 역할」 서울에서 개최		
21	1991. 12. 6		한국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이 군인 등 32명과 함께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	
22	1991. 12. 7		가토[加藤] 관방장관, 태평양전쟁 중 일본군으로 동원된 한국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불가 방침 발언	
23	1991. 12. 8		다나베 마코토[田辺誠] 사회당 위원장, '도의에 기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결의를 밝힘 일본 정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정부 관여 가능성이 있는 6개 성청(省庁)에 대해 조사 실시	
24	1991. 12. 10	일본 정부,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계없음을 표명.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사죄와 진상규명 등의 요구 사안을 전달		
25	1991. 12. 11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가토 관방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일본 대사관에 보내고 데모, 수요정기집회 결의		
26	1991. 12. 16		가토 관방장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내각 중심의 조사체제 검토,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처 의지 표명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27	1991. 12. 25		한국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명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2명이 일본 측에 일본 국회 및 유엔총회에서의 공식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아마구치[山口]지방재관소 시모노세키[下關]지부에 제소	
28	1992. 1. 8	서울에서 제1회 수요시위	가와시마[川島] 공사,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개입을 증명할 증거가 없음을 발언	
29	1992. 1. 10		미야자와 수상, 《산케이신문[産經新聞]》과의 인터뷰 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 요시미[吉見] 씨, 발견한 일본군'위안부' 관계 자료를 공표	
30	1992. 1. 11		와타나베[渡邊] 외무대신, 텔레비전 방송에서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고 발언하며, 정부 고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	
31	1992. 1. 12		가토 관방장관, 미야자와 수상 방한 중 일본군'위안부' 징집 과정에서 일본군부의 역할을 설명할 것임을 언급	
32	1992. 1. 13		가토 관방장관, 기자회견 중 “일본 정부는 한반도의 많은 분들이 일본의 과거 행위로 인하여 참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것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유감을 표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로 인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초를 겪은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발언, 일본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죄	
33	1992. 1. 1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0번 신고전화 설치	13단체가 도쿄에서 사죄 및 보상요구 집회를 개최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행동네트워크(従軍慰安婦問題行動ネットワーク)발족	
34	1992. 1. 16	노태우 대통령, 미야자와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언급	가토 관방장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보상에 준하는 조치를 검토 중임을 밝힘	
35	1992. 1. 17		미야자와 총리, 한일정상회담에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	
36	1992. 1. 22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유엔인권위에 제소 발표		
37	1992. 1. 26			버마전선 일본군'위안부' 자료, 미국공문서관에서 발견
38	1992. 2. 5			필리핀 군 관리 자료 미국 캔자스대학 그랜트 굿맨 명예교수가 공표
39	1992. 2. 15	재일한국인 목사 최창하, 제네바인권위원회사무국을 방문, 재일한국인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료 추가 제출		
40	1992. 2. 17		변호사 도쓰카 에쓰로[戸塚 悦郎],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인도적이며, 유엔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개입을 촉구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41	1992. 2. 21			타이베이시부녀구원사회 복리사업기금회[台北市婦女 救援社會福利事業基金會],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조사 핫라인 개설 대만입법원에서 43명의 입 법위원이 배상요구를 제안
42	1992. 2. 25	한국 정부, 시·구청에 '피해자센터' 개설, 신고와 청취조사 개시		
43	1992. 3. 1	한국기독교교회여성연합(韓 國キリスト會女性連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명 과 함께 오키나와 도카시 키[渡嘉敷]에서 배봉기 썬 위령제 개최		
44	1992. 3. 9		와타나베 외무대신, 외무 위원회에서 일본군'위안 부'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 결 의사 표명	
45	1992. 3. 13			대만, 일본군'위안부'에 대 한 사죄 및 금전적 배상을 공식 요구
46	1992. 3. 16		미야자와 총리, 참의원에 산위원회에서 일본군'위 안부' 문제는 국가 간에서 는 해결되었지만,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 리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 라는 견해 표명	
47	1992. 4. 26			태평양전쟁 중 필리핀에 일본군위안소의 존재 사실 확인
48	1992. 4. 1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6명,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49	1992. 5. 13			국제연합인권위원회에 문 제담당팀, 일본군 '위안부' 에 대한 정보제공을 갈리 (Ghali) 사무총장에게 요구 하는 보고서 채택 유엔차별소위원회에 적노에게 작업부회, 사무총장에게 일 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제작부회가 수명한 정보를 반 보벤 차별소위특별보고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
50	1992. 5. 1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김 학순 외 5명), 일본 총리부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역사 자료관 건설 등 5개 요구항 목 제시		
51	1992. 6. 25	한국 정부, 2월부터 실시 한 청취조사를 종료		
52	1992. 7. 3	한국 정부, 2~6월에 실시 한 조사에서 74명의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 확인, 발표		
53	1992. 7. 6	한국 정부,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제1차 조사 결과에 대해 '사실조사를 더 기대'한다고 발언	정부, 「조선반도출신 이른 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朝鮮半島出身の 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 について)」 제1차 조사결 과 발표, 127건 자료 공표 가토 관방장관, 기자회견 에서 정부의 관여를 인정 하고 사죄와 반성의 마음 을 표명	
54	1992. 7. 7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부의 조사결과에 항의 성명		
55	1992. 7. 9			중국 외무성 "엄숙하고 진 지한 대처를 희망한다"고 발언
56	1992. 7. 10	한국 정부, 독자 조치 검토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57	1992. 7. 11		일본변호사협회 아베[阿部] 회장,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조사의 불충분함 지적, 철저한 조사 촉구 일본변호사연합회인권옹호위원회, 심포지엄 「일본의 전후처리를 묻는다(日本の戦後処理を問う)」 개최	
58	1992. 7. 13			인도네시아 정부, 일본 정부의 대응 환영
59	1992. 7. 16			인도네시아에서 전 일본군 ‘위안부’가 증언
60	1992. 7. 21			네덜란드 법무성이 ‘바타비아 군사법정에서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로 만든 일본군 12명에게 유죄판결’ 했음을 공표
61	1992. 7. 31	한국 정부가 「일제하의 군대‘위안부’실태조사중간보고서(日帝下の軍隊慰安婦実態調査中間報告書)」를 발표하고, “압도적인 모집이 있었다”, “일본의 성의 있는 사실 조사를 요구한다”고 주장		
62	1992. 8			유엔 일본군‘위안부’ 문제 거론(UN Sub-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63	1992. 8. 7			중국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 정부의 사죄 및 배상금 등의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에 전달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64	1992. 8. 10 ~8. 11	'일본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서울에서 개최.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에서 참가,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공동행동을 확인		
65	1992. 8. 12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증언모임' 개최		
66	1992. 8. 13 ~8. 14	한국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韓國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 평양과 일본에서도 참가하여 청취조사와 심포지엄을 개최		
67	1992. 8. 14			유엔인권소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실태 관련 자료 수집 결의 타이베이시부녀구원사회복리사업기금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발표
68	1992. 8. 15		한국, 미국, 독일 등의 시민운동가와 학자, 재일한국인, 일본인 등 약 850명이 오사카에 모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촉구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포럼 개최	
69	1992. 8. 29	일본군'위안부' 등 일제침략 피해자 369명, 일제침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도쿄지방법관소 제소		
70	1992. 9. 1 ~9. 6			제3회 '아시아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에서 개최 4명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참가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71	1992. 9. 18			필리핀에서 마리아 로사 헨슨 씨가 처음으로 증언
72	1992. 10. 5			마리아 로사 헨슨 씨, 일본 수상에게 「교과서에 기술을」이라는 편지를 일본 대사관에 보냄
73	1992. 10. 10			필리핀에서 새로운 두 번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증언
74	1992. 10. 16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대표, 도쿄에서 '보상을 대신하는 조치에 반대'한다고 발언		
75	1992. 10. 22			필리핀에서 22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확인
76	1992. 10. 23	한국 외무장관, 한국 국회에서 '생활지원을 검토'한다고 발언		
77	1992. 10. 24		규슈[九州] 변호사연합회, 결기대회에서 한국인 강제연행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면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대회 선언 채택	
78	1992. 12		정부조사대상을 국립국회도서관 등으로 확대, 미국 국립공문서관에서 공문서 조사 정부, 전 군인, 전 위안소 경영자 등에 대한 청취조사 개시	
79	1992. 12. 6		아시아태평양전쟁피해자와 국회를 연결하는 집회 (アジア太平洋戦争被害者と国会をつなぐ集会) 개최	
80	1992. 12. 7	재판제소 1주년집회개최, 전국 각지에서 증언집회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81	1992. 12. 8			중국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언 호주·네덜란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언
82	1992. 12. 9		일본의 전후보상에 관한 국제공청회를 도쿄에서 개최. 한국, 북한, 네덜란드, 필리핀, 중국 피해자가 참가, 반 보벤 씨도 참가	
83	1992. 12. 12			네덜란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언
84	1992. 12. 25		한국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한 2억 8,600만 엔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제기	
85	1993. 1. 3	제1차 회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의 전후처리를 위해 국회에 전후보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		
86	1993. 1. 23		재일 ‘일본군‘위안부’재판을 지지하는 모임(「慰安婦」裁判を支える会) 발족	
87	1993. 1. 18			한국 정부, 제49회 유엔인권회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 측에 철저한 진상조사의 실시와 충분한 보상을 요구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88	1993. 2			유엔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거론(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미국 서해안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
89	1993. 3. 2			필리핀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지하는 모임(「フィリピン人元「従軍慰安婦」を支える会」) 발족
90	1993. 3. 13	김영삼 대통령,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일본에 물질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으로 진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물질적 보상은 필요없다. 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내년부터 한국정부 예산으로 조치한다”고 발언		
91	1993. 3. 17			네덜란드에서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을 선동한 자료 확인
92	1993. 3. 23		일본변호사연합회 아시아 각지에서 전쟁피해자에 대한 조사 개시	
93	1993. 3. 27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매월 지원금 15만 원과 1회의 생활보조기본금 500만 원 지급,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및 영구 임대주택 입주 지원 등의 방침 밝힘		
94	1993. 4. 2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8명, 도쿄지방법원소에 제소 말레이시아에서 2명이 증언했다고 보도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95	1993. 3. 5	재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송신도(宋神道) 씨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		
96	1993. 4. 6		단바[丹波] 조약국장, 참의원외무위원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ILO(국제노동기구) 29조 경제노동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표명	
97	1993. 4. 21		전쟁책임자료센터 발족	
98	1993. 4. 24		제4회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도쿄, 오사카에서 개최	국제법률가위원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조사 개시
99	1993. 5			유엔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거론(UN 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일본 정부, 모든 청구권은 양자 간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며 입장 정리
100	1993. 5. 14		전쟁책임자료센터, 정부에 조사위설치를 요청	
101	1993. 5. 15			빈 유엔세계인권회의에서 전 일본군'위안부' 증언, 일본 NGO 일본 정부 비판 발언
102	1993. 5. 18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 국회 통과		
103	1993. 5. 25			국제법률가위원회(ICJ), 유엔인권위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조사 중간보고서 제출
104	1993. 5. 27	한국, 필리핀 재일 지원 그룹과 전국자치단체직원노동조합 일본 정부에 청취조사, 사죄, 보상을 요구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105	1993. 6.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국민주택특별공급권 부여		
106	1993. 6. 5		'한일 명확한 콘서트(日韓ハッキリコンサート)' 상상타이퐁[上々颱風] 등이 출연 1,000명이 참가하여 개최	
107	1993. 6. 30	김영삼 대통령, 다케후지 외무대신과의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배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실 규명을 강조		
108	1993. 7		일본 정부, 오키나와에서 현지조사 실시 일본 정부, 한국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대상 청취조사 실시	
109	1993. 7. 24 ~7. 26		일본 정부, 한국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대상 청취조사 실시	
110	1993. 8			유엔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기론(UN Sub-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111	1993. 8. 4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관방장관담화를 강제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	정부, 「이른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2차 조사결과 발표, 고노[河野] 관방장관 담화 발표 일본군'위안부' 모집의 강제성 및 일본 정부와 군이 관여했음을 인정 전쟁책임자료센터, 인도에 대한 죄라고 코멘트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8명이 새로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
112	1993. 8. 25			유엔차별소위, 「전시하의 조직적 강간·성적노예제 및 노예제 유사관행」의 특별보고자로 사페스(동소위 원회위원)를 임명(단, 94년 3월 인권위에서 사페스의 연구는 유보됨)
113	1993. 8. 31	한국보건사회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지원법의 통과로 지원자 121명 확정 및 자세한 지원책 발표		
114	1993. 9	한국 정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 개시	일본변호사연합회, 일본군'위안부' 등 전쟁 피해에 대한 아시아해외조사보고서 발표 『전쟁책임연구(戦争責任研究)』 창간	
115	1993. 9. 9		다케무라 관방장관, 중의 원내각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보상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고노 담화를 계기로 배상문제 이외의 형태로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표명	
116	1993. 10. 28		일본변호사연합회, 제36회 인권옹호대회 제1분과회에서 전후 보상 문제를 테마로 논의	제네바인권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등 전후보상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차별 및 인권 문제를 심의 대상으로 거론하며, 일본 정부의 보고서를 받아들임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117	1993. 11. 3			미 의원 24명, 일본군'위안부' 문제 '소송 제기'에 관한 조사 요구 서한을 호소카와 [細川] 총리에게 송부
118	1993. 11. 7		누마다[沼田] 외무성(外務省) 참의관(參議官), 1994년부터 모든 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아이들에게 교육한다는 방침 밝힘	
119	1994. 1. 25			네덜란드 전쟁 피해자 8명, 도쿄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 상대로 제소(일본군'위안부' 1명 포함)
120	1994. 2. 7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군'위안부' 27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고소장을 도쿄지검에 제출(지검 수리 거부)		
121	1994. 3. 5			유엔인권위원회, 구(舊)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에 관계된 책임자 처벌에 대한 사안을 담은 결의문 채택. 책임자 처벌의 관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
122	1994. 4			유엔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일본군'위안부' 문제 포함)' 특별보고관으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Radhika Coomaraswamy) 임명
123	1994. 5. 24	현생존자강제군대'위안부'피해자대책협의회(現生存者強制軍隊慰安婦被害者對策協議會) 방일(訪日), 보상요구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124	1994. 6. 6		‘전후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집회’ 도쿄에서 개최, 한국, 필리핀, 재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참가, 무라야마[村山] 사회당 당수 및 신당사키가케(新党さきがけ) 소속 하토야마[鳩山]도 출석	
125	1994. 6. 7	한국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 국회 앞에서 시위		
126	1994. 7. 18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필리핀인 일본군‘위안부’를 지원하는 모임(KAISAKA), 재일 일본군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이 일본 정부의 아시아교류센터·기금구상 등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		
127	1994. 7. 22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의 기금구상 비판		
128	1994. 8. 4	한일 시민단체 일본 정부 비판		
129	1994. 8. 13			아시아태평양전후보상 국제포럼 개최(~14일까지)
130	1994. 8. 15			국제중재재판을 성공시켜 개인보상을 실시토록 하는 모임(國際仲裁裁判を成功させ個人報償を實施させる會) 발족
131	1994. 8. 19		일본 정부, 일본군‘위안부’ 보상 문제와 관련해 민간 모금에 기초한 위로금 전달을 검토 중임을 발표	유엔인권위원회, 특별조사관 2명에게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에 관한 조사 지시, 처음으로 유엔기구의 공식조사가 실시됨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132	1994. 8. 22			필리핀인 일본군‘위안부’를 지원하는 모임 등이 일본 정부의 기금구상 비판
133	1994. 8. 24			피델 라모스(Fidel V. Ramos) 필리핀 대통령, 일·필 수뇌회담에서 일본 측의 대응 평가
134	1994. 8. 28		도쿄에서 기금구상 반대 집회 개최	
135	1994. 8. 31		무라야마 총리, 전후 50주년을 맞이한 담화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해서 언급, “폭넓은 국민 참가의 길을 함께 탐구하고 싶다”고 발언	
136	1994. 11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위안부’ 문제의 범죄성 규정: “It is indisputable that these women were forced, deceived, coerced and abducted to provide sexual services to the Japanese military...[Japan] violated customary norm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slavery and the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137	1994. 11. 9		관방장관 자문기관으로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설립의 검토를 위한 전문가회의(「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の設立検討の有識者會議) 설치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138	1994. 11. 22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국제중재에 응할 것을 일본 정부에 제의		국제법률가위원회(ICJ) 최종보고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과 보상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 한 사람 당 미국 돈 4만 달러의 잠정적 보상 제안 쿠마라스와미(국제연합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특별보고자’), ‘위안부’ 관련기술 포함한 잠정보고서 제출
139	1994. 11. 24	파고다공원에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국회결의와 사죄를 요구하는 집회 개최 한국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일본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 돌입		
140	1994. 12. 7		여당 전후 50년 문제 프로젝트팀 일본군‘위안부’ 문제소위원회(從軍慰安婦問題小委員會)가 「소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제1차 보고(いわゆる從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第1次報告)」 발표	
141	1994. 12. 8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데모
142	1994. 12. 9	한국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여당의 합의에 대한 반대 성명 발표 및 단식투쟁 종료		
143	1994. 12. 12	김수환 추기경 「진상을 밝히고, 보상과 사죄를 요청」 하는 서한을 무라야마 총리에게 송부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144	1995. 1. 10			유엔인권위원회, 4월 일본과 한국에 일본군'위안부' 문제 조사단 파견 계획 발표
145	1995. 1. 24		일본변호사연합회,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입법조치를 통한 사죄 및 보상을 일본 정부에 제언	
146	1995. 3		제9회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 중 일본변호사연합회 보고서: 제8장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 관련 내용 중 일본이 안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중 하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열거하면서 전후 50년을 계기로 피해자의 조기 구제와 법적 책임의 명확화를 긴급 과제로 언급	유엔워크숍에서 '위안부' 피해 여성을 지지하는 결의안 채택(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NGO workshop)
147	1995. 3. 1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일본 정부의 기금구상 비판		제3회 아시아연대회의 개최. 평양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언(~6일까지)
148	1995. 3. 2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 정부의 기금구상 반대 집회 개최	변호사 단체 「외국인전후 보상법(外國人戰後補償法)」 시안 발표	
149	1995. 3. 8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의 잠정보고서 「여성에 대한 폭력 처벌」 결의 채택
150	1995. 3. 17		시민단체 '속임수의 민간 기금에 반대하는 3·17 집회(ごまかしの民間基金に反対する3・17集會)' 개최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151	1995. 3. 20	한국노동조합총연합,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강제노동금지에 대한 국제 조약위반으로 일본 정부를 ILO 이사회에 제소		
152	1995. 4. 28			국제연합 차별소위원회(現代의奴隸制作業部會),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보고서 채택
153	1995. 5. 19		민간단체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창설	
154	1995. 5. 22			린다 차베스(Linda Chavez), 필리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정부관계자 등과 면담
155	1995. 5. 23			유엔인권소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린다 차베스, 국제 문제로서 일본군'위안부' 조사를 위해 방한(訪韓)
156	1995. 6. 9		중의원 본회의에서 「역사를 교훈으로 한 평화로의 결의(決意)를 새롭게 하는 결의(決議)」 가결	
157	1995. 6. 14		이가라시[五十嵐] 관방장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기금(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友好基金)'의 사업내용으로 국민적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 민간의 기금과 국고에 의한 의료복지지원사업,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사업 등 발표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158			일본 정부, 아시아평화기금의 직접 지원 방안 검토 중임을 표명 일본 정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현금 보상을 목적으로 일본 민간인출자의 민간기금 설립 계획 표명	
159	1995. 6. 15		시민단체, 이가라시 관방장관 발표에 항의 성명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 등이 무라야마 총리에게 사죄와 보상을 제의 오사카부[大阪]특별교원조합(OFSET), ILO에 '강제노동금지 위반(強制勞動禁止に違反)'으로 일본 정부 제소	필리핀 라모스 대통령, 일본 정부의 '기금' 설립에 환영의 뜻을 발표
160	1995. 6. 19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아시아여성기금) 발족	
161	1995. 6. 22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 일본군'위안부' 문제조사를 위해 공식적으로 방일(~27일까지)
162	1995. 7. 26		이가라시 관방장관,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에게 기금설립 등에 대해 설명	
163	1995. 8. 3			국제연합 차별소위(差別小委), 차베스의 「전이하 조직적 강간 등에 관한 작업 보고서」를 환영하며, 차베스를 특별보고관으로 임명
164	1995. 8. 7			중국의 전쟁피해자 15명,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일본군'위안부' 피해자 5명 포함)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165	1995. 8. 11		일본 정부, 아시아여성기금 실시 사업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한다는 각의 양해	
166	1995. 8. 15		전후 50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 무라야마 총리, 시민집회에 출석해 한국 일본군'위안부' 등 전쟁피해자와 대면, 사죄의 뜻 전달 아시아여성기금, 모금 개시	
167	1995. 8. 18			유엔인권위원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 국제연합 차별소위, 현대적 노예제작업부회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결의를 채택
168	1995. 8. 30			베이징[北京]에서 세계여성대회 개최 한국 정대협 참가
169	1995. 9			제4차 유엔세계여성학술회의(World Conference on Women), '위안부' 여성 지지 결의안 채택
170	1995. 9. 4	정대협 및 일본, 필리핀, 북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단체 등이 합동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민간기금 반대, 진상규명, 배상 등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 발표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171	1995. 9. 14			베이징 여성회의, 정부 간 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 대표단은 침묵으로 일관
172	1995. 11. 16		일본번호사연합회, ‘국가적 보상제도를 요구하는 모임’ 회장 성명 발표	
173	1995. 12. 18		일본 정부, ‘전후 50년을 기념하는 모임’ 개최	
174	1996. 1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유엔 인권위 제출
175	1996. 2. 6		가자야마[梶山] 관방장관, 유엔보고서와 관련해 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음을 언급함으로써 국가배상 불가 입장을 명시	국가연합 인권위,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자 쿠마라스와미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보고서 발표
176	1996. 2. 16		하시모토[橋本] 총리,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일본 정부로서 사실 확인 및 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음을 표명	
177	1996. 2. 18	한국 ‘태평양전쟁희생자 원호센터’ 개설		
178	1996. 3. 1			국제노동기구조약권고적용전문위원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위안부’는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규약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 대만입법위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총리와 중의원장 및 참의원장에게 요청서 송부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179	1996. 3. 4			ILO조약권고적용전문위원회 “OFSET의 제기를 기초로 한다면 임금 및 기타 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견해 표명 대만입법위원,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총리와 중의원장 및 참의원장에게 요청서 송부
180	1996. 3. 29			제4차 아시아여성단결대회, “일본군‘위안부’ 관련 범죄를 처리할 국제재판소의 창설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181	1996. 4			유엔인권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내용을 고려하는 타협결의안’ 채택
182	1996. 4. 9			제네바에서 ‘기금반대, 권고를 지지하는 국제협의회’ 결성
183	1996. 4. 10	신준영 주제네바 대사,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국가보상을 실시하도록 한 유엔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		국제연합 인권위,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심의에서 한국 정부 “자주적이고 신속하게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권고 실행을 위해 필요한 단계를 밟도록 일본 정부에 요청한다”고 발언, 중국, 필리핀 외 북한도 입회인으로서 발언 대만입법원 160명 중 131명의 입법위원이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
184	1996. 4. 18			한국, 북한, 일본, 필리핀, 대만 등의 시민단체, 아시아여성기금 거부 선언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185	1996. 4. 19			국제연합 인권위,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결의를 채택.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전체를 주목하는 것에 그침
186	1996. 5. 12		1997년부터 사용되는 일본 중학교 사회지리 등 7종 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내용 서술	
187	1996. 6. 4		자민당 의원, '밝은 일본 국회의원연맹(明るい日本国会議員連盟)' 결성하고 교과서 기술을 비판, 116명의 의원이 참가, 회장은 오쿠노[奥野] 전 법무대신이 맡음	
188	1996. 6. 20	한국 국회의원 191명,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서명 공표		
189	1996. 6. 23		하시모토 총리, 김영삼 한국 대통령과 제주도에서 회담, 하시모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	
190	1996. 6. 26			국제연합 차별소위원회적 노예제작업부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세에 관한 정보에 주목하는 보고서 채택
191	1996. 7. 19		아시아여성기금, 한국, 필리핀, 대만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한 사람 당 200만 엔의 일시금 지급과 국고에 의한 7억 엔 규모의 의료복지지원 사업 실시 결정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192	1996. 8			유엔인권소위원회, 전시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협조 촉구
193	1996. 8. 23			국제연합 차별소위원회노예제작업부회보고 관련부분을 “일본 정부의 대처 대한 유의한 정보를 환영한다”라고 새로이 결의 채택
194	1996. 8. 24			유엔인권소위원회, 행정재판소의 신속한 설치를 위한 결의안 채택
195	1996. 10. 18	한국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 한국 시민 등 모금 개시		
196	1997. 1. 11		아시아여성기금, 한국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기금 전달	
197	1997. 1. 15		아시아여성기금, 필리핀에서 의료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 합의	
198	1997. 5. 22		일본 자민당 내 일본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들의 모임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교과서 기술 삭제 등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	
199	1997. 6. 15	캄보디아에서 생존 중인 ‘위안부’ 피해자 훈 할머니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짐		
200	1997. 7. 25			미 하원 본회의에 일본 정부가 전쟁범죄 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
201	1997. 8. 5	훈 할머니 귀국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202	1997. 8. 8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정부와 민간대표(NGO)들이 '정신대민간보상'을 비난
203	1997. 8. 18	한국 정부와 민간대표들, 제네바의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일본 정부의 민간기금 형태의 보상을 비난		
204	1997. 8. 26			유엔인권소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동원 문제와 관련해 유엔 등 관련 기구들과의 협력 촉구
205	1997. 12. 16	'위안부' 피해자임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던 김학순 할머니 사망		
206	1998. 3. 28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원금 48억 8천여만 원의 지급 계획을 알림		
207	1998. 4. 6			일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조사해온 유엔인권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은 4년간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보고서 제출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1부 '무력분쟁시의 여성에 대한 폭력' 부분에서 2쪽에 걸쳐 기술하면서 일본 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의한 일련의 손해 배상청구소송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208	1998. 4. 14	<p>한국 정부, 일본군‘위안부’지출결의안 의결</p> <p>특히 외교통상부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에 행한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성명 발표</p> <p>국무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3천 8백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함. 그러나 일본 정부 측에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안건처리는 보류</p>		
209	1998. 4. 27		<p>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지부 일본군‘위안부’·여자근로정신대 청구 소송 1심 판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국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 국가의 입법부작위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원고 3명에게 각 30만 엔의 배상을 명함. 단, 여자근로정신대 원고의 청구는 기각</p>	
210	1998. 5. 1		<p>시모이나바[下稻葉] 법무대신, 일본군‘위안부’ 관련 청구소송 판결에 불복, 히로시마[廣島]고등재판소에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여자근로정신대 측도 항소</p>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211	1998. 8. 13			일본군의 위안소 운영은 노예제도 및 노예거리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전쟁범죄로서의 강간이며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한 책임을 강조한 「맥두 걸보고서」 제네바인권소위원회에 제출
212	1999.8.23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마이클 혼다 의원이 상정한 일본군'위안부'결의안 (AJR 27) 채택
213	1999. 10. 1		일본 재판부, 1993년 4월 5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송신도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에 기각 판결을 내림	
214	2000. 9			한국, 대만, 필리핀 출신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5명, 1787년 외국인 불법행위 청구법(Alien Tort Claims Act)에 근거,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제소
215	2000. 11. 30		일본고등법원, 재일한국인 송신도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 “위안소 설치는 당시의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국제법상 개인이 가해국을 상대로 직접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재일한국인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후 20년이 지난 1985년에 이미 소멸되었다”며 기각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216	2000. 12. 8		9명의 법률가로 구성된 남북합동검사단, 도쿄에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에서 히로히토 [裕仁] 일왕과 도조 히데키 [東條英機] 등 성노예 가해자 8명을 반인도죄와 강제노동조약 위반 등에 죄목을 들어 일본 정부의 만행을 기소	
217	2000. 12. 8 ~12. 10			여성국제전범법정 개최
218	2000. 12. 12		'여성국제전범법정', 히로히토 전 일왕의 법적책임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를 적용	
219	2001. 3. 29		최고재판소, 일본군 '위안부'·여자근로정신대 청구 소송의 상고파기, 상고수리파기, 패소확정, 일본군 '위안부' 원고에 대해 '역전 패소', 정신대원고에 대해 '전면기각' 판결을 내림	
220	2001. 5			리처드 바우처 국무성 대변인, 미 연방법원에 관할권 없음을 언급
221	2001. 6. 7			ILO 산하 기준적용위원회의 노동자회의, 일본 측의 반대에도 사상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
222	2001. 7			래인 에반스 의원,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 195호 발의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223	2001. 10			헨리 케네디 판사, 2000년 9월 한국, 대만, 필리핀 출신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5명, 1787년 외국인 불법행위 청구법(Alien Tort Claims Act)에 근거,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한 소송 기각
224	2001. 12. 4			일본군 '위안부' 문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 여성법정'에서 일본에 대한 유죄 및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판결이 나옴
225	2003. 3. 26		1998년 일본의 지방법원이 최초로 태평양전쟁 당시의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인정, 큰 관심을 모았던 시모노세키 소송이 패소로 막을 내림, 1998년 당시 배상금 지급 판결을 뒤엎고, 일본 정부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짐	
226	2003. 6			2001년 10월 기각된 소송 상소를 더글러스 긴스버그, 주디스 로저스, 데이비스 테이텔 3판사가 기각
227	2003. 7. 22		아시아태평양전쟁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사건 도쿄지방법관소 판결	
228	2004. 12			2003년 6월 기각된 상소심은 최고재판소에 상소, 항소 재판소의 재심으로 이어짐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229	2006. 2			레인 에반스(Lain Allen Evans), 크리스토퍼 스미스(Christopher Smith), 두 의원의 결의안 759호 초당적 발의, 생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 촉구
230	2006. 10			미의회조사국(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래리 닉쉬 메모 랜덤
231	2007. 1			마이크 혼다(Mike Honda) 의원, 결의안 121호 발의
232	2007. 2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개최(장소: Rayburn House Office Bldg 2172호/증언: 이용수, 김근자, Jan Ruff O'Herne, Mindy Kotler, Ok Cha Soh)
233	2007. 3. 16		아베 내각, '위안부' 강제 연행의 직접적 증거 없음을 각의 결정	
234	2007. 6. 14		역사사실위원회,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 조직적·강제적 '위안부' 모집은 없었다는 하타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여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며, 혼다 의원이 주도하는 '위안부' 제도가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였다는 미 하원 결의안의 주장은 역사왜곡이라는 내용의 'THE FACT' 광고 게재	
235	2007. 7. 30			연방하원본위원회, 만장일치로 결의안 121호 통과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236	2007. 11. 8			네덜란드 의회 하원 일본군 '위안부'결의안 채택
237	2007. 11. 28			캐나다 연방의회 하원 일본군 '위안부'결의안 채택
238	2007. 12. 12			유럽의회 '위안부'결의안
239	2007. 12. 13			유럽의회 '위안부'결의안 채택
240	2013. 1. 29			미국 뉴욕 주 상원에서 일본군 '위안부'결의안(No.J.304) 채택
241	2013. 3. 21			미국 뉴저지 주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결의안(ACR 159) 채택
242	2013. 5. 24			미국 일리노이 주 하원 일본군 '위안부'결의안(HR 0365) 채택
243	2013. 5. 30			미국 일리노이 주 상원 일본군 '위안부'결의안(SR 1073) 채택
244	2013. 6. 20			미국 뉴저지 주 상원에서 일본군 '위안부'결의안(SCR 124) 채택
245	2014. 1. 2			미국 캘리포니아 주 쿠퍼티노(Cupertino) 시 당국이 "위안부'기림비' 설치 방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
246	2014. 1. 10			지린[吉林]성 당안관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이 일본 정부 소행임을 밝혀주는 문건 발견
247	2014. 1. 15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 기록을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기억유산'에 등록하기 위한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힘	스가 관방장관, 한국의 '위안부' 관련 기록 세계기억유산 신청에 반대입장 표명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며 기자회견에서 강조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248	2014. 1. 16			미국하원세출법안에 '위안부' 문제 포함 '위안부' 세계기억유산 등재에 중국도 협력 미국상원에서 '위안부'법안 통과
249	2014. 1. 17			미국 오바마 대통령, 일본 정부의 '위안부'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통합세출법안에 정식 서명 뉴욕에서 처음으로 '위안부'결의안 기립비 건립
250	2014. 1. 28	여성가족부, 벨기에 브뤼셀의 유엔본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를 알리는 특별 세션 개최		
251	2014. 1. 29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나눔의 집 방문	아베 총리, 중의원 본회의에서 "유엔의 지적은 사실 오인에 의한 일방적인 것"이며, "유엔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발언	
252	2014. 1. 30			여성가족부, 프랑스 앙굴렘(Angouleme) 시에서 '위안부' 만화전 개최
253	2014. 2. 4	법원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의 재판 출석을 위해 일본 법무성에 사법공조를 요청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 존 케리국무장관에게 '위안부' 문제 법안 이행의 촉구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
254	2014. 2. 11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작품전에 참석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255	2014. 3. 11			‘위안부’ 피해자 안 루프 오 헤른 할머니, 호주 ‘위안부’ 소녀상 건립에 동참하겠다고 밝힘
256	2014. 3. 28			유엔여성기구사무국장 훔질 레믈람보-웅쿠카(Phumzile Mlambo-Ngcuka),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언
257	2014. 4. 25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 비판 지린성당안관, ‘위안부’ 731 부대 관련 일본의 중국 침략 관련 문서 87건 공표
258	2014. 4. 26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 언급
259	2014. 5. 15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국장급협의 도쿄에서 개최		재미 중국계 반일단체 세계항일전쟁사실유호연합회, 미국 ‘위안부’ 동상 철거 소송에 진술서 제출
260	2014. 5. 30			미국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청사에서 ‘위안부’ 기림비 제막 행사 개최
261	2014. 6. 10		스가 관방장관, 중국의 등재 신청은 정치적인 목적에 기초한 것이라며 중국의 등재 신청 철회 요청	중국 외교부대변인 화춘잉[華春瑩], 난징대학살과 ‘위안부’ 관련 역사적 문서 자료를 유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계획임을 밝힘
262	2014. 6. 20	미국 상원, ‘위안부’ 해결 촉구 서한의 사본을 나뉘의 집에 전달	아베 내각,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정부가 사전에 문안을 조정했다는 검증 결과 보고서 작성	
263	2014. 7. 7			대만 정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일본군‘위안부’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264	2014. 7. 8			일본명예부채재단(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 회원들, 네덜란드 헤이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고노 담합 검증에 항의하며 일본의 과거사 사과와 배상을 요구
265	2014. 7. 15			유엔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 일본군 '위안부'와 협한 시위에 대한 심사 착수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표현 대신 강제성노예(enforced sex slaves)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일본 측을 비판 중국 중앙당안국, 이성육을 채우기 위해 중국에 위안소를 개설했다는 일본군 지휘관 출신 전범의 증언 공개
266	2014. 7. 23	'위안부' 문제 한·일 국장급협의 재개		
267	2014. 7. 24			유엔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여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
268	2014. 7. 30			미국 백악관, 국무부 관계자들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함
269	2014. 8. 4			뉴욕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제막
270	2014. 8. 5	대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착공	《아사히신문》, '위안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직시가 필요함을 보도	미국 캘리포니아법원, 일본 단체의 글렌 데일 '위안부' 동상 철거 소송 기각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271	2014. 8. 6	일본군'위안부' 관련 전시회 작품 훼손한 일본인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됨	교도통신, 《아사히신문》이 '위안부' 관련 보도의 일부를 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이 《아사히신문》 관련 인사를 국회에 소환하여 설명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아사히신문》이 '위안부' 보도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고 보도	유엔인권최고대표 나비 필레이(Navi Pillay), 성명서를 통해 일본이 전쟁 중 성노예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음을 비판
272	2014. 8. 8		일본 우익,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관련 오보 인정 기사를 계기로 '고노 담화'를 또다시 비판	미국 백악관,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본 압박
273	2014. 8. 13	여성가족부, 서울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에서 일본군'위안부' 평화 나눔 콘서트 개최	전 NHK기자 이케다 노부오 [池田信夫], 「군의 관여는 쟁점이 아니다」라는 글을 아고라(http://agora-web.jp/archives/1607867.html)에 올림	필리핀 최고법원,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
274	2014. 8. 14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 세계 156만 명 지지 서명 정의화 국회의장, 나눔의 집 방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		
275	2014. 8. 16			캐나다의 중국계 시민단체 '아시아 제2차 세계대전 사실(史實) 보호회', 정대협이 추진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 명 서명 운동'에 동참 미국 미시간 주 사우스필드 시에서 일본군'위안부' 소녀상 제막식 개최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276	2014. 8. 18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위로		
277	2014. 8. 21		일본 자민당, '위안부' 문제와 고노 담화에 관한 새로운 담화를 2015년에 발표하도록 정부에 요구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이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일본군'위안부' 관련 문제해결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혐오발언과 시위에 대해서도 법적규제를 가하도록 촉구
278	2014. 8. 22		무라야마 전 총리,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정상 간의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	
279	2014. 8. 29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시도를 규탄하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
280	2014. 8. 31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
281	2014. 9. 15			중국에서 일본군'위안부'를 다룬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위안부' 소녀상 제막
282	2014. 9. 18			미국 연방하원 테드 포우 공화당의원, 군대'위안부' 강제동원과 성노예 강요 등 과거의 악행을 모두 자백하라고 일본을 공개 비판
283	2014. 9. 19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제4차 한일 국장급 협의가 도쿄에서 열림		캐나다인권박물관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전시 개최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284	2014. 9. 24	박근혜 대통령, 유엔총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		
285	2014. 10. 3			네덜란드 프란스 팀머만스 외무장관,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은 분명한 사실임을 지적
286	2014. 10. 10		일본 외무성, 공식홈페이지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이 공표한 '성금호소문' 삭제	
287	2014. 10. 15	한중희 유엔 차석대사,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의 해결 촉구	일본역사학연구회, 아베 내각의 군 '위안부' 강제연행 부정에 반박하는 설명 발표	
288	2014. 10. 16		스가 관방장관,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철회해줄 것을 작성자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에게 요청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일본 정부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일부 내용 철회 요청을 거절
289	2014. 10. 24	박근혜 대통령, 일본의원들과의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를 해결하는 첫 단추이며, 피해자와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는 퇴행적인 언행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양국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하다”고 발언	스가 관방장관, 고노 전 관방장관의 '강제연행' 발언의 오해 해소를 위해 각국에서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중임을 밝힘	
290	2014. 11. 10	박근혜 대통령, APEC 만찬에서 아베 총리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각종 한일 현안 및 북핵 문제를 논의		
291	2014. 11. 18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 측에 미국 세계사 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내용 수정 요청 사실 공표	

번호	연월일	한국	일본	국제사회
292	2014. 11. 23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내용 수정 요구 거절
293	2014. 11. 27	서울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제5차 한일 국장급 협의회 개최		미국 정부의 독일과 일본의 전쟁 범죄의 재조사에서 일본의 '위안부'와 관련된 전쟁범죄 및 '여성의 조직적인 노예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음이 밝혀짐
294	2014. 12. 19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미국 마이크 혼다 하원 의원과 회담	후나바시시의회, "일본군의 강제 연행사실은 없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 통과	
295	2014. 12. 20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 '나눔의 집' 방문		
296	2014. 12. 22		《아사히신문》, 제3차 위원회 보고서에서 '위안부' 관련 오보의 방지와 취소 대응의 지연은 독자의 신뢰를 배신한 것임을 비판	
297	2014. 12. 25	국가기록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 1,065점 국가기록물로 추가 지정		
298	2014. 12. 26		아사히신문사 와타나베 마사타카[渡邊雅隆] 사장, 잘못된 '위안부' 보도 사죄 '사실(史實)을 세계에 발신(發信)하는 모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한 책자를 미국 의회에 발송	